

법령용어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법언어학적 연구

A Study on Language of Law about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in Law

연구자 : 강현철 (부연구위원)

Kang, Hyun-Cheol

2003. 8.

한 국 법 제 연 구 원

## 목 차

제 1 장 서 론 .....	7
I. 연구의 목적 .....	7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제 2 장 법과 언어 .....	11
I. 법과 언어와의 상호관계 .....	11
1. 법의 매개체로서의 언어 .....	11
2. 법에 있어서 언어이론의 적용 .....	12
3. 법과 언어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령용어 .....	14
II. 외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의 수용 .....	15
1. 법의 계수의 개념정립과 계수과정 .....	15
2. 현행 우리나라 법률용어의 형성배경 .....	17
3. 법률용어의 형성과정과 순화문제 .....	19
III. 법언어의 이해와 심리학적 접근방법 .....	21
IV.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과제 .....	23
1.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추진경과 .....	23
(1) 구법령정리사업 .....	23
(2) 법령의 한글화 추진 .....	25
1) 법령의 한글·한자표기기준 설정 .....	26
2) 법령용어정비요강의 제정 .....	26
(3) 법령용어정비기준의 제정·추진 .....	26
(4) 현행법령정비사업 .....	27
2.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추진실적 .....	28
(1) 용어정비 추진절차 .....	28
1) 정비대상용어의 선정 .....	28
2) 정비대상용어의 관련기관 검토 및 공고 .....	28
(2) 세부추진내용과 실적 .....	29
1) 법령용어정비의 기반조성(1983-1986) .....	29

2) 법령용어의 민주화추진(1988-1990) .....	30
3) 법령용어의 한글화 및 외래어정비(1991-1992) .....	30
4) 법령용어의 표준화·명확화(1993-1994) .....	31
5) 법령용어순화작업의 검토와 지속화와 다각화(1994 이후) .....	31
<b>제 3 장 법령용어와 문장의 특징과 형식 .....</b>	<b>33</b>
I. 법령용어의 개념과 특성 .....	33
1. 의의 .....	33
2. 법령의 상용문자 .....	34
3. 숫자·외래어 및 부호 .....	35
(1) 숫자 .....	35
(2) 외래어 .....	36
(3) 부호 .....	36
4. 띄어쓰기 .....	38
II. 법령문의 문장구조와 기본형식 .....	39
1. 법령문의 특색과 문장구조 .....	39
(1) 법령문의 특색 .....	39
(2) 법령문의 문장구조 .....	40
2. 법령문의 기본형식 .....	41
III. 법령문의 표현기준 .....	44
1. 표현의 명확성 .....	45
2. 표현의 평이성 .....	46
3. 명확성과 평이성의 상관관계 .....	48
<b>제 4 장 법률용어와 문장에 대한 검토와 과제 .....</b>	<b>49</b>
I. 법령용어와 문장에 관한 검토기준 .....	49
1. 서 .....	49
2. 법령에서의 한글화 확대 .....	50
3. 일본어식 법령용어의 정비 .....	52
II. 법령용어에 관한 국어학적 검토와 과제 .....	55
1. 서 .....	55

2. 어문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례 .....	55
(1) 맞춤법·외래어 표기법과 띄어쓰기의 경우 .....	55
1) 맞춤법·외래어 표기법 .....	55
2) 띄어쓰기의 경우 .....	56
(2) 문장부호 사용상의 문제점 .....	57
3. 문법에 맞지 않는 사례 .....	58
(1) 조사사용의 예 .....	58
(2) 어미사용의 예 .....	59
(3) 호응관계의 예 .....	59
(4) 접속구성의 예 .....	60
(5) 지시어의 예 .....	61
(6) 능동·피동형태의 예 .....	63
4. 의미적으로 부적절한 사례 .....	64
제 5 장 정보통신 관련용어의 수용과 과제 .....	67
I. 서 .....	67
II. 정보혁명과 전자공간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 .....	69
1.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접근방법 .....	69
2.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내지 공간민주주의 .....	71
3. 정보화관련입법 및 법령용어 .....	72
(1) 글로벌 규범화 논의의 고려 .....	72
(2) 산업경쟁력의 고려 .....	73
(3) 정보공유와 다양성 고려 .....	74
(4) T-Code와 L-Code의 고려 .....	74
III. 정보화관련 법령용어의 수용과 과제 .....	75
1. 서 .....	75
2. 법령용어의 개념정립에 관한 방안 .....	76
(1) 개념의 명확화와 통일화에 대한 논의 .....	76
1) 정보(통신)과 '전자'개념의 명확화 .....	76
2) '전자문서' 개념의 통일화 .....	78
(2) 기타 법령용어의 개념정립에 관한 논의 .....	79

1) 전자서명 .....	79
2) 전자무역 .....	80
3) 전자문서집합체(데이터베이스) .....	81
IV. 법령용어수용에 따른 방향과 과제 .....	82
제 6 장 결 론 .....	85
I. 법과 언어의 상관관계에 따른 용어정립의 방향성 .....	85
II. 한국어와 법령용어의 정립에 관한 소고 .....	86
참 고 문 헌 .....	89

## 제1장 서론

### I. 연구의 목적

법령용어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실무와 학계간의 교류부재에 따른 연구와 관행의 정착으로 인하여 매우 체계적이지 못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법언어학적인 연구의 미비는 학계간에 있어서도 연구의 고립을 통한 상호간의 영역에 대한 이해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법과 언어에 있어서 나타나는 상호간의 관련성에 관한 철학적·사상적 연구와 학계(국어학과 법학을 포함한 관련학문분야)와 실무간의 연구성과에 대한 교류와 상호통합을 통한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이에 본 글에 있어서 법령용어에 관한 법언어학적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각 분야간의 고립된 연구성과를 나름대로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령용어의 수용과 통일에 관하여 연구해 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학문분야간은 물론 학계와 실무계에 있어서 연구성과와 방향의 차이를 어떻게 수렴하는가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는 실무계가 실무적인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입법기술적인 측면으로의 접근에 한정된 풍부한 실무적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론적 바탕에 있어서의 학문적 내용보다는 관행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매우 보수적인 입법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에 학계는 이론적인 내용에 기초한 철학적·사상적 법언어학의 범주에서 학문적 통일성과 철학적 체계에 기초하면서 실무적이고 생활적인 법령의 체계적 내용구성과 관련된 내용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어학계와 법학계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어학계가 순수한 우리말 위주의 법령사용에 강한 집착을 보이며 문법적 요소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함으로써 법학의 전문영역에 기한 언어사용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상호간에 주장함으로써 학문교류의 장벽을 높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각 분야의 영역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본 글에서는 사회적 요

소에 기한 일반국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알기 쉬고 접근에 용이한 방향으로의 법령용어의 순화와 한글화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학계와 실무계의 자기 영역에 대한 고립에서 탈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법령의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은 민주화된 현대사회의 법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방향성으로 생각되며, 곧 헌법이 추구하는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국가의 형성에도 옳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법령에 있어서 법령용어 사용에 대한 분명한 국민적 기준이 확립된 바도 없이, 각 계의 논의를 통일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으며, 학문적 논의와 실무적 연구를 총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방향성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현행 우리나라의 법령은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 뜻이 불분명한 문장 등 법령용어와 문장의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다. 특히, 일반인의 법령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sup>1)</sup>. 이에 본 글에 있어서의 연구와 관련된 범위는 이러한 기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통일적인 법령용어사용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이론적·실무적 내용을 바탕으로 학제간의 내용을 보다 광범위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법령용어와 관련된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법과 언어’라는 제하에 법과 언어와 관계는 물론 법령용어와 법령문장에 있어서의 사용례와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해서 이론적 내용과 실무적 내용 상호간에 있어서의 이해의 폭을 좁히고 이론적인 내용과 실무적인 내용을 상호 조화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법언어학적 관점에 있어서 법과 언어의 이론적인 측면을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법령용어와 법령문장에 관하여는 그 동안 국내에 있어서

---

1) 대표적인 조사로서 박영도·최성근·손희두,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01 참조.

연구된 문헌과 실무계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법과 언어 및 법령용어와 문장에 대한 내용에 기초한 법령용어와 문장에 관한 법이론적·실무적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행 법령의 용어와 문장에 관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의 현행 법령상의 용어와 문장사용에 따른 법령입안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현행 법령에 있어서 법령용어와 문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법령용어와 문장에 관한 기준과 내용 및 국어학적인 관점에 있어서 법령용어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문법적 오류 및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학제간의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최근의 정보통신 관련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새로운 용어의 법령에의 수용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법령에 있어서 새로운 용어를 어떻게 수용하고 정착하며, 올바르게 일반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새로운 용어에 대한 단순한 법령용어에의 수용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과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법·제도적 관점에 있어서 시대를 선도하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특히 외래어의 남발에 따른 우리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법학의 언어적·내용적 충실성을 기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본 글의 연구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언어학과 법학관련 저서와 논문을 살펴봄은 물론 법학관련실무계의 연구자료와 실무자료 및 관행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또한 법학계에 한정된 논의에서 벗어나 가능한 국어학계의 법령용어와 문장관련 연구자료와 논문을 참조하며, 그 동안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된 법령용어정비 및 순화관련사업에 있어서 연구된 각계의 연구자료 역시 폭넓게 활용하고자 한다. 이론과 실무간의 상호접목을 위하여 관련 연구자료와 논문간의 유사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연구를 병행하고자 하며, 각 학문분야간의 연구자료 역시 상호 비교·검토에 충실을 기하고자 한다.



## 제 2 장 법과 언어

### I. 법과 언어와의 상호관계

#### 1. 법의 매개체로서의 언어

언어는 법의 매개체이자 주제이며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법은 본질적으로 언어에 구속되며, 그 자체 언어적 성질을 띠게 마련이다<sup>2)</sup>. 그러나 언어는 법의 단순한 매개체만은 아니며, 법사용에 있어 사고의 핵심이 되고 또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즉, 언어적 표현은 법적 대상이 되며, 이 대상은 법적 언어에 의하여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언어는 법의 매개체, 주제 및 대상일 뿐 아니라 역으로 법언어도 상당한 부분 일상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와 개개 자아의식은 물론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의미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법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회적 제도에도 구속되며, 법이 사회적 제도를 전제로 하지만 법이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법은 제도적으로 기속된 언어일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구속하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sup>3)</sup>. 또한 법은 그 전체로서 필요적으로 언어적 구성체를 이룬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회적 제도이며, 언어를 통하여 고정화된 하나의 의미로서 작용하고 있다.

법은 또한 법적 제도 자체가 언어적 형성체로서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제도적으로 기속된 언어로서 나타나며, 하나의 특수언어로서 고유한 의미를 가진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고 언어로서 고유한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 결과 법체계 속에서 법언어는 일종의 고유한 존재철학(Ontologie)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규범이나 법의 효력이 상징적으로 극복되어지는 “사물화된(verdinglichende) 언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sup>4)</sup>. 법은 특수언어로서 스스로 차별화하고 또 고유한 의

2) Klaus Günter, *Recht und Sprache*, 법과 언어(한국법제연구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1년 9월 21일, 9면.

3) Klaus Günter, *전개논문*, 11면.

4) Klaus Günter, *전개논문*, 13면.

미와 제도를 갖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였고, 따라서 법은 독자적인 언어와 의사소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법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언어의 차별화와 보편화 현상은 현대사회를 특징지우는 징표들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 2. 법에 있어서 언어이론의 적용

언어란 단어의 체계이며, 단어란 기호의 일종으로서 언어는 대체적으로 어휘와 문법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란 ①기본적으로 음성기호인 점, ②사회적·문화적인 것으로 학습을 요한다는 점, ③도구로서 능동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④언어기호의 다수가 일반성을 지니며 그것을 조합하여 문장을 만들어 무한하게 다양한 사태를 알릴 수 있다는 점, ⑤그 결과 생활의 구체적 정황에 대해 고도의 독립성을 지니고 있으며 언어기호를 현실의 사물로부터 분리하여 조작할 수 있다는 점등을 지적할 수 있다<sup>5)</sup>. 인간의 언어는 본능적인 것이 아니며, 문화의 일부로서 언어습관을 몸에 익혀 가는 것으로서 일상의 단어가 우리에게 대하여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것이 언어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일정의 사물이나 사태에 결부시켜 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의미론적 특색이 법이론에 있어서의 의의는 무엇이며, 법이론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인가는 법해석 이론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6)</sup>.

일반적으로 언어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영역은 ①언어적 기호와 대상의 의미관계를 연구하는 의미론(Semantik), ②기호와 기호의 결합규칙을 분석하는 문장론(Syntaktik), ③언어적 기호의 일반이론연구인 기호론(Semiotik), ④기호사용자와 기호의 맥락을 파악하여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기호의 적합한 의미를 결정하는 활용론(Pragmatik) 등이 있다<sup>7)</sup>. 이러한 언어이론은 기호로서의 언어의 성질·기능을 명확히 함으

5) 碧海純一, 法と言語, 日本評論社, 1965, 43-44면.

6)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용어정비를 위한 기초이론-, 한국법제연구원, 1995, 20면 참조.

7) 자세한 것은 김방한, 언어학의 이해, 민음사, 1994, 54-59면 참조.

로써 실정법의 적용 및 해석과정의 분석을 위하여 이바지하며, 법에 있어서 자연언어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문제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며, 보편명사의 실체화로부터 발생하는 법학상의 혼란의 해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언어에 관한 이론적 기초는 법해석을 통한 의미의 명확화에 응용되어지며, 해석을 통하여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법률문제의 객관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학의 주요임무 중의 하나인 제정법의 해석<sup>8)</sup>은 현대법질서의 단계구조, 권력분립주의 및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기초하는 법치국가사상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억제하고 모든 국가활동이 법의 구체화로써 영위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을 기초로 하여 법률·명령 기타 입법 등으로 법질서를 단계적 구조로 구성하였으며, 재판의 담당자인 법관은 입법자가 만든 법률의 엄격한 구속하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권력분립주의와 법적 안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해석이란 언어의 일반적 체계속에서 법언어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언어기호를 사용하여 그 법언어에 대한 의사소통가능한 의미를 모색하는 행위로서 법률단어의 의미는 그것이 법적 의사공동체 속에서 사용됨으로써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다<sup>9)</sup>.

인간의 언어는 우리가 지닌 추상능력에 대응하여 고도의 일반성·추상성을 지닌 단어를 그 어휘 중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 사용에 의하여 우리는 환경적응력을 비약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위한 언어적 기술의 일환이며, 그 법률이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되어 비로소 통합과정은 완결되는 것이다. 언어적 기호를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현실의 생활내용으로부터 분리하여 이것에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근대법체계가 지닌 대규모적이고 고도의 통일성을 지닌 사회통합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언어의 성질과 기능, 언어

8) 제정법의 해석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로는 최대권, 제정법의 해석, 법학(서울대) 제30권 1·2호, 1989, 122-137면 참조.

9) 이상돈, 법률해석-말놀이예의 구성적 참여, 저스티스 제27권 제2호, 1994, 184면.

와 사물의 관계 등과 같은 의미의 문제가 법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모든 법의 척도로서 효력을 가지는 헌법규정이 정하는 지침과 관련하여 법과 언어의 관계에 관하여는 필연적으로 성문화(문서화)와 권력분립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자리하게 된다<sup>10)</sup>. 이는 언어 역시 법률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며, 법률은 단순한 언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여러 다양한 작업의 대상이다. 따라서 법률은 규정을 통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며, 그 해석을 통하여 풍부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언어기호의 의미를 통한 법관법이나 해석학을 통하여 풍부해지는 것이다. 또한 언어사용에 있어서 입법적 명확성의 확보는 집행의 정확과 판단의 정확성을 담보한다는 관점에 있어서 권력분립의 경계는 언어라는 구조물을 통하여 가능하며, 언어를 통해 권력분립의 작동원리는 그 성공여부를 담보한다고 하겠다<sup>11)</sup>.

### 3. 법과 언어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령용어

법과 언어와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접근은 법이 언어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에 관한 내용과 언어이론에 관한 법논리에의 적용에 관한 논의는 ‘법과 언어’라는 상관관계에 의하여 규명되어지는 것이다<sup>12)</sup>. 즉, 법과 언어와 관계는 법에 있어서의 수단적 요소로서의 언어의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언어에 의해서 형상화되는 언어의 표현양식으로서의 법적 존재에

10) Winfried Hassemer 저, 배종대·이상돈 편역, 형법정책(Strafrechtspolitik), 세창출판사, 1998, 116-117면 참조.

11) Winfried Hassemer 저, 배종대·이상돈 편역, 전계서, 117-118면 참조.

12) 이러한 법과 언어와의 관계에 대하여 A. Kaufmann교수는 법언어와 법문화의 관계, 법언어의 문체, 법률전문용어와 일상용어의 관련성, 법률언어·판결언어·법정에서의 언어들 간의 차이점, 법률언어의 구조론적·해석학적 문제점들, 규범적인 것들의 언어화, 법언어사회학(예컨데 법언어, 사회, 문화의 관계), 구조주의적 법학의 문제로서의 법적 언어(예컨데 법언어는 어떻게 기능하는가?), 법언어의 형식화가능성(예컨데 전산기 도입문제) 등의 문제가 학문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법철학적 접근방법임을 언급하고 있다(A. Kaufmann, 심현섭역, 법과 언어(Recht und Sprache), 서울대 법학, 통권 제58-59호(1984), 203면).

대한 상호관계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용어와 관련된 법과 언어와의 관련성은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표현양식으로서 법적 존재에 대한 보다 완전한 구성요소로서 작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적 전개를 기본적 요소로 한다고 하겠다. 이는 법철학적 접근 방법에 관한 언어이론의 적용이나, 법언어학의 이론적 내용에 대한 분석이 아닌 실제로 우리나라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분석적 접근을 기초하여 이를 통한 법령언어의 올바른 균형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법령용어의 일반화, 한글화, 평이화의 문제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전문용어로서의 법령용어와 일반용어로서의 법령용어의 조화적 균형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법령용어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실체적 연구를 먼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법언어학적 관점의 이론적 입장이나 실체적 연구에 관한 용어의 변용에 한하지 않고 보다 본질적인 법령용어의 정착적인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전문용어와 일상용어의 중개·교류의 문제이며, 법령사용자의 일상적인 언어적 표상들이 법령용어로서 번역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의 전문적인 개념들이 사용자의 일상용어에 대해 개방되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령개념이 폐쇄적이고 추상적인 유사개념들(Klassenbegriffe)로부터 구체적인 유형으로 전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sup>13)</sup>.

## II. 외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의 수용

### 1. 법의 계수의 개념정립과 계수과정

외국법의 계수에 있어서는 외국의 법률용어를 주로 번역차용하여 자국어화한다는 점에서 법과 언어와의 관계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즉, 언어를 법의 도구가 아닌 법의 본질로서 이해함으로써 법률용어의 자국어화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며, 계수법률의 정신에 따른 자국어의 법률용어를 창조하는 작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4)</sup>. 따라서 외국법

13) A. Kaufmann, 전제논문, 213-216면 참조.

을 계수할 경우에 있어서 법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법령용어의 정확한 번역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오랜 외세의 영향하에 놓인 우리나라의 법계수와 법령용어의 번역에 대한 노력이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sup>15)</sup>.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크게 세 차례의 외국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입법체계를 형성하였는 바, 중국의 율령제도의 계수, 개화기 이후의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 계수 및 해방 이후의 영미법 계수 등이 그것이다<sup>16)</sup>. 즉, 우리나라의 입법체계형성에 있어서 외국법의 계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해방 이후의 법령제정에 있어서 일본법의 번역에 가까운 계수는 민족사적 관점에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sup>17)</sup>.

일반적으로 법의 계수라 함은 중세 이후 유럽에서 진행된 로마법의 계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19세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대륙법을 계수하기 시작하면서 개념정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각국에 있어서 대륙법의 계수는 법전화, 서구화 또는 근대화 그리고 서구열강의 제국주의 정책에 의한 식민지화를 들고 있는 것<sup>18)</sup>이 일반적이며, 계수의 범위와 관련하여 식민지에 대한 법의 강제이식도 계수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 광의적인 의미로서의 법의 계수를 어떤 국가의 법문화가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sup>19)</sup>. 이렇게

14) 로마법의 계수를 위한 사비니의 법률용어의 독일어화 작업에 대한 노력은 매우 창조적인 작업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Savingy, Vom Beruf unserer Zei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S. 52. in : Thibaut und Savigny, Ihre programmatischen Schriften mit einer Einführung von Hans Hattenhauser, S. 127.).

15) 박병호, 외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 『외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한국법제연구원·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9면 이하 참조.

16) 임중호, 한국에서의 외국법의 계수와 법률용어의 형성과정, 외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한국법제연구원·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2. 9. 13., 25면 이하 참조.

17) 해방 이후의 법전편찬사업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최종고, 현대한국법제의 형성과정고, 법학(서울대) 제32권 제1·2호, 62면 이하 참조; 또한 형법제정과정에서 있어서의 일본법 의존도에 관하여는 배종대, 우리나라 법학에 대한 반성과 전망, 현상과 인식, 1987(불호), 103면 이하 참조.

18) 澤木敬郎, 法の繼受, 外國法と日本法(現代法 14), 131면 이하.

19) 계수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번역된 것으로서 일반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최종고, 한국법의 근대화와 서양법의

볼 때, 우리나라가 서구의 근대법을 계수한 시점을 1894(고종 31년)의 갑오혁신으로 잡는 것이 옳바르다고 하겠으며<sup>20)</sup>, 이를 통하여 조선왕조의 구제도가 붕괴되고 근대적 국가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법의 계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한 서구문화의 수용으로 인하여 법학분야와 입법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음으로써, 독일법체계의 간접적 계수가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이는 우리의 서양법 계수가 일본을 매개로 하는 일본화된 서양법의 계수라는 관점에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sup>21)</sup>.

## 2. 현행 우리나라 법률용어의 형성배경

우리나라의 법령용어의 대부분은 외국의 법령용어를 번역차용하여 형성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의 법령용어에 대한 번역차용에 있어서 직접번역에 의한 차용이 아니라 일본이 외국의 법률용어를 번역차용한 것을 일본에서 재차용하였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다. 따라서 언어학적 어휘분류체계에 의하면 현행 법령용어의 대부분은 차용어(Lehnwort, loan word)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그러나 현행 법령용어의 계수기에 해당하는 일본의 명치시대는 시대적으로 언어적·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인 계수였다는 점에서 법령용어의 번역문제는 오역과 부적합한 번역이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법령용어를 오늘날 우리의 법전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서구법을 계수하면서 외국의 법령용어를 번역차용하는 방법으로서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즉, 하나는 중국의 고전 등에 나오는 어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법률용어로 사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방법이었다<sup>23)</sup>. 이는 일본이 외국의 법령용

수용, 한국법학 50년-과거·현재·미래(I), 525면).

20) 박병호, 현대법제의 형성과 법제의 발전방향, 법제연구 제8호, 8면.

21) 계수과정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중호, 전계논문, 28면 이하 참조.

22) 이덕호, 언어차용에 관한 연구 I, 한글 제169호, 223면 이하; 외래어와 차용어는

외래어휘로서 국어에 동화되어 고유어와 같이 된 어휘를 말한다.

23) 임중호, 전계논문, 35-36면.

어를 번역차용함에 있어서 한자와 한자의 탁월한 조어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sup>24)</sup>. 표의문자인 한자의 경우에는 비록 생소한 조어를 하더라도 그 의미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었던 것이며, 특히 일본이 독일법을 계수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역시 조어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어의 추상적인 법률용어를 번역차용함에 있어서 한자의 조어력은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25)</sup>. 따라서 현행 법령용어가 한자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것은 곧 한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조건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sup>26)</sup>.

또한, 외국법 계수 당시의 일본인들은 외국의 법령용어의 번역차용에 필요한 어휘를 중국의 고전이나 한시 또는 불경 등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의 지식층 사회에 고취된 유학숭배풍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료와 학자들의 권위주의적 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서 현행 법령용어를 난해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sup>27)</sup>. 당시 신조된 법령용어 중에는 일본 전래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것과 일본식 한자어(和製漢語)를 기초로 성립된 것이 많은데 상당수는 우리의 현행 법령용어로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引渡·組合·株式 등의 법령용어는 일본에서는 한자로 쓰기만 할 뿐 혼독되는 것으로 순수한 일본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이를 한자음으로 음독하여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어학자들은 제2차적인 국어순화의 대상언어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법령용어는 이미 확고하게 정착된 것이므로 그 성공여부는 미지수라 하겠다<sup>28)</sup>.

24) 碧海純一, 法學の文章と日本語, 林大·碧海純一編, 法と日本語, 123면.

25) 碧海純一, 전계논문, 124면.

26) 임중호, 전계논문, 36면.

27) 일본에서의 독일형법의 계수와 권위주의의 작용에 대해서는 이상돈, 법과 한국어, 법과 언어(법제연구원·한국법철학회·고려대 법학연구원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59면; 명치시대 일본지성인들은 서양학문을 전통학문에 비하여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서양학문을 번역할 때는 서양학문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이기 위하여 일본인의 자연언어 또는 일상언어를 배제하고 심오한 분위기의 한문으로써 번역해야만 했다(김용욱, 철학의 사회성, 도올논문집, 1991, 98면 이하 참조).

28) 임중호, 전계논문, 37면; 김광해, 조망-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 12면 이하.



### 3. 법률용어의 형성과정과 순화문제

외국법의 계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국의 법령용어를 자국어로 수용하는 방법은 언어학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외국 법령용어를 원어 그대로 차용하는 직접차용(음역차용)과 외국의 법령용어를 자국어로 번역하여 차용하는 직접차용(번역차용)의 방법이 그것이다<sup>29)</sup>.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접차용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 법령용어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 구체적인 차용방법에 따라 차용지역, 차용의역, 차용의미, 차용창조 등으로 세분된다<sup>30)</sup>. 전통적인 외국어 번역방법으로써는 직역과 의역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 접근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sup>31)</sup>.

차용직역(Lehnübersetzung)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용어를 축어적 번역에 의하여 자국의 법령용어로 차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원어를 형식적으로 모방하는 방법으로 번역이 이루어진다. 특히, 명치시대의 외국어의 번역은 원칙적으로 축어적 번역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축어적 번역방법에 의하여 차용된 법령용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법률행위(Rechtsgeschäft:독), 법인(juristische Person:독), 동산·부동산(meuble·immeuble:불), 합명회사(société en nom collectif:불), 선일자수표(Vordatiertes Scheck:독), 충실의무(duty of loyalty:영) 등이 있다<sup>32)</sup>. 차용의역(Lehnübertragung)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용어를 어원적 모방 또는 임의적 모방에 기초한 번역을 통하여 자국의 법령용어로 차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번역의 방법은 법령용어의 번역에 있어서 자주 이용되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신의성실(bona fides:로마), 復代理人(Untervertreter:독 ↔ 複代理人), 복임권, 집중투표(cumulative voting:영 ↔ 누적투표:일) 등이 이에 해당

29) 임중호, 전계논문, 37면.

30) 이덕호, 전계논문, 254면 이하.

31) 언어학적 측면에서의 번역이론에 관해서는 김윤한, 번역의 개념과 언어학적 기초론, 인문논총(서울대 인문학연구소) 제42집, 117면 이하 참조.

32) 구체적인 번역의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는 임중호, 전계논문, 38면 이하 참조.

한다고 하겠다<sup>33)</sup>.

차용의미(Lehnbedeutung)라 함은 기존의 자국어 어휘에 외국 법령 용어가 가지는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외국의 법령용어를 번역하여 차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번역에 사용된 어휘는 주로 중국의 고전이나 한시 등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법률(Gesetz:독, loi:불 ↔ 법+율)<sup>34)</sup>, 권리(right:영 ↔ 權利)<sup>35)</sup>, 의무(duty, obligation:영)<sup>36)</sup>, 意思(will, intention:영, intention :불, Wille:독), 선의·악의(bonne foi·mauvaise foi:불), 이사·사외이사(일본은행조례 제17조:1882년)<sup>37)</sup>, 지배인(Prokurist:독), 급부·이행(Leistung·Erfüllung:독), 상인(Kaufmann:독), 조합(Gesellschaft :독) 등의 용어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sup>38)</sup>. 차용창조(Lehnschöpfung)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용어에 대한 적절한 대응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어휘를 신조하여 외국 법령용어를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sup>39)</sup>, 회사(회+사 ↔ 사회)<sup>40)</sup>, 채권, 주식, 物融(리스) 등의 용어가 있다.

그 밖에 직접차용(Direktentlehnung)에 의하여 성립된 법령용어가 있다. 이는 법령용어를 어형 그대로 수용하여 법령용어로 차용하는 것으로 외국 법령용어나 사물의 명칭에 대한 적절한 대응어가 없는 경우 원어와의 간격을 좁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번역방법이라고 하겠다. 이는 정보처리기술과 관련되는 법률에서는 이러한 직접차용의 예가 증가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디지털 등의 용어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용어는 어

33) 구체적인 의미와 해설에 관하여는 임중호, 전계논문, 41면 이하 참조.

34) 莊子 徐無鬼 “法律之士廣治”

35) 荀子 權學編 “是故權利不能傾也”; 大久保泰甫, 法の繼受と言語. 전계 法と日本語, 162면.

36) 論語 擁也 “務民之義”.

37) 이사라는 어휘자체는 불교의 理事(본체와 현상 : 사리와 동일한 의미)에서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摠郷正明·飛田良文 편, 明治のことは辭典, 589면 이하).

38)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임중호, 전계논문, 45면 이하 참조.

39) 송민, 대통령의 출현, 새국어생활, 2000. 10., 제4호.

40) 동일어의 도치에 의한 용어의 창조의 예를 들면, 결의와 의결, 합병과 병합, 증서와 서증 등이 있다.

설뿐 국어화가 오히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만, 본질적으로 외국의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직접차용하기 보다는 원칙적으로 국어화를 위한 시도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41)</sup>.

이상에서 살펴본 법령용어의 계수와 관련된 내용은 현행 법령용어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학문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의 법령용어 순화에 있어서도 용어의 연혁적 이해를 동반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Ⅲ. 법언어의 이해와 심리학적 접근방법

현행 법령용어에 대한 난해함과 복잡성은 법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법령에 있어서의 난해함과 복잡함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인지능력에 따른 심리적인 요소의 작용에도 기인하는 바 있다고 하겠다<sup>42)</sup>. 이는 법령용어의 사용에 관한 단순한 언어적 접근에 대하여 사회적·인간적 인지작용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기존의 법령에 대한 인지적 관점의 변화는 생산자 중심의 요구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용어와 문장의 사용을 통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법령언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인 인간이 이를 읽고, 기억하며, 이해하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법령에 함의된 의미가 사용자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기억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하며, 법령이 법률전문가의 편익에 제공되는 전유물이 아닌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41) 임중호, 전제논문, 56면.

42) 법령용어에 관한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은 이재호, 법령용어 및 문장의 이해에 작용하는 인지심리적 제약,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정비사업단 제1차 전문가회의 자료집), 2002. 5. 17., 181면 이하 참조.

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법률이 기본적으로 언어로 구성되며, 언어의 기본적 기능이 의사소통이며 지식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법령 사용자간의 의사소통의 원활함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령의 언어정보 역시 일반언어에 있어서의 인지체계적 작동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sup>43)</sup>.

법령용어에 있어서의 언어적 단위는 단어와 어휘로 구성되며, 법률문장은 문장과 텍스트의 수준에 의하여 검토되어 진다. 일반적으로 문장과 텍스트를 구분하는 준거는 한글의 경우 어휘가 주어-목적어-술어로 구성된 단위를 말하며, 문장수준에 있어서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언어적 단서와 텍스트에 있어서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텍스트 수준에서 사용자의 지식이나 추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 지식은 문장과 문장을 참조적·인과적·대형구조적으로 연결하여 텍스트의 수준을 추출하게 된다. 이는 법령의 용어·문장 및 텍스트 수준의 언어가 사용자의 지식과 추론의 특성과 상응된 구조를 지닐게 될 때 법령의 개념과 의미의 이해가 최고조로 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법령에 대한 인지적 만족감은 법령과 사용자가 가까워질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하겠다. 즉, 법령이 사용자에게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쉽게 이해되면 그 법령에 대한 기억력도 증가하게 되며, 기억된 법령은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법지식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령이 지니는 의미와 지식의 표현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생소함을 준다고 해도 사용자가 가능한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언어가 인지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법령용어에 관한 최소한의 언어심리적 요청이라 하겠다<sup>44)</sup>.

이상에서 간단히 법령용어에 관한 언어심리학적 관점의 접근에 관하여

43) 일반적으로 영어의 경우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한 단어를 읽는데 250ms(1/4초) 정도 소요되며, 한자는 영어에 비해서 읽기시간이 50-70ms길다고 조사되고 있다. 한국어에 대하여는 현재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나 영어와 한자의 중간정도로 추정된다(이재호, 전계논문, 185면).

44) 언어심리학에 대하여는 이정모·이재호 편, 인지심리학의 제문제(II)-언어와 인지, 학지사, 1997 참조.

살펴보았다. 그 동안의 법령용어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법령어휘와 문장의 문법적 수준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언어심리학적인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은 법령에 사용되는 언어와 법령사용자간의 인지와 언어심리적 접근방법으로서 언어와 표현에 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sup>45)</sup>.

#### IV.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과제

##### 1.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추진경과<sup>46)</sup>

###### (1) 구법령정리사업

법령용어순화 정비사업은 정부수립이후 추진되었던 구법령정리사업과 함께 병행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우선 구법령정비사업의 추진배경과 그 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법령정비사업은 1948년 정부수립이후에도 구한말법령·일제법령(조선총독부)·미군정법령이 우리나라의 법령과 같이 시행됨에 따라 당시의 제헌헌법에의 저촉 등<sup>47)</sup> 불분명하고 국민감정에 맞지 아니하며, 문자·용어의 표기가 부정확하거나 혼란을 주어 일반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법령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구법령정비사업은 제헌헌법의 공포와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수립직후부터 각계각층의 요구에 의하여 착수하였으나, 6·25사변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

45) 이재오, 전계논문, 196-197면; 동 교수는 언어심리적 관점에 의하여 현행 대한민국 헌법전문을 재구성하고 있다.

46)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추진경과와 관련한 내용은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112면 이하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바 이를 기초로 하여 본 고에서는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최근(2000년 이후) 한국법제연구원과 국립국어연구원 등의 법령용어 정비사업의 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47) 제헌헌법 제10장 부칙 제100조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미군정법령 제21호 『법률제명령의 존속(1945. 11. 2 공포)』에서 “모든 법률 및 조선구정부가 발표하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규칙·명령·고시 기타 문서로서 1945. 8. 9 실행중인 것은 그간 이미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조선군정부의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모두 효력을 가지고 존속한다(동 법령 제1조)”라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에도 구법령의 효력이 존속하게 되었다.

고 5·16이후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구법령정비사업은 먼저 1948년에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특별기구로서 『법전편찬위원회직제(1948. 9. 15 대통령령 제4호)』를 제정하여 법령편찬위원회가 설치되었다<sup>48)</sup>. 이후 1951년에는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던 구법령의 유·무효를 조사심의하고 이에 대체할 새 법령의 기초를 준비하며, 통일된 법령집의 편찬·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령정리간행위원회(1951. 5. 12. 대통령령 제499호)』를 설치하였다<sup>49)</sup>. 또한 6·25사변 중에 거의 중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법령정리간행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여 『법령정리위원회(1956. 7. 19. 대통령령 제1169호)』를 두었으며<sup>50)</sup>, 400여건의 구법령 정비<sup>51)</sup> 및 법문 내용의 표기에 있어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sup>52)</sup>.

그러나 구법령정리사업에 관한 5·16이전의 나름의 노력은 정부수립이후 국정이 안정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하여 정부가 제출한 구법령정리법안이 국회의 의사일정에 조차 오르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sup>53)</sup>. 이에 5·16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구법령정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하여 『구법령정리에

48) 위원장에는 김병로가 임명되었으며, 위원은 기초위원과 일반위원으로 나누어 졌다. 일반위원에는 법률가만이 아니라 경제학자, 사학자, 교육학자 등 학계의 대표들도 참여하였다. 법전편찬위원회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각법별 개별분과 위원회와 기초위원을 두고 이에 일반위원을 배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법전편찬위원회의 활동뿐 아니라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자료 등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또 남아있는 것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와 관련된 자료의 종합적 정리와 발간이 요청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명근, 현대법제의 역사적 형성과정, 저스티스 제27권 제2호(1994), 126-127면 참조.

49)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법제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실무를 법제처가 담당하였으나 당시 6·25사변 중이어서 예산조치가 없어 이렇다할 업적은 없었다(법제처, 법제처40년사, 1988, 127면).

50) 동 위원회는 법제실(1955. 2. 7. 법 제354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법제처가 법제실로 명칭을 바꿈)소속하에 법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률학을 전공한 국회의원·법조계·행정공무원 기타 법률학교수 등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참사 등을 임명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

51) 당시 정리된 400여건을 법령별로 보면 구일본법률 30건, 구제령 73건, 구칙령 25건, 구총령 218건, 기타 일제때의 제법규 20건, 군정법령 46건 및 기타 군정법규 5건 등이다(법제처, 법제처40년사, 127면 참조).

52) 법제처, 법제처40년사, 127-128면.

53) 김용진, 구법령정리사업에 관한 소고, 법제 제218호(1988. 1. 20.), 36면.

관한특별조치법(1961. 7. 15. 법 제659호)』를 제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수반 감독하에 『법령정리위원회』를 두어 위원장은 내각사무처장(1961. 10. 법제처설치후 법제처장)으로 부위원장은 법제처장으로 하여 1962년 1월말까지 약 5개월동안 400여건의 법령을 새로이 제정하고 500여건의 구법령을 폐지하는 등 일단 구법령정리사업을 마무리하였다<sup>54)</sup>.

## (2) 법령의 한글화 추진

해방과 더불어 새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우리 민족고유의 글자인 한글을 전용하여야 한다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함에 따라 『한글전용에관한법률(1948. 10. 9. 법률 제6호)』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한글전용은 크게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부터 한글타자기가 보급되면서 공문서 등에 있어서 한글화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발전과 아울러 중등 및 고등교육의 확대에 의하여 법령을 모두 한글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법령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법령한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령의 한글화사업을 더욱 촉진시킨 또 하나의 계기는 1962년헌법(1962. 12. 26.)제정 당시 알기 쉬운 헌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문학자의 도움을 받아 한자보다는 한글을 많이 쓰도록 하였던 것도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sup>55)</sup>.

54) 구법령정리사업은 불과 165일동안 193건의 법률과 250일동안 각령 196건을 제정하여 총389건의 법령을 제정하였고, 618건의 과거법령을 폐기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구법령정리사업은 지나치게 신속성을 강조한 나머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법령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령용어의 정비도 병행하였으나 충분한 검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자세한 내용은 김용진, 전계논문, 38면 이하 참조).

55) 제헌헌법에서 한자를 사용하던 것을 1962년헌법에서 한글로 표기한 용어 중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면 ①定한다→정한다, ②如何한→여하한, ③爲하여→위하여, ④依하여→의하여, ⑤對하여→대하여 등이 있다.

### 1) 법령의 한글·한자표기기준 설정

정부에서는 1969년 5월 1일 『법령의 한글·한자표기기준』을 설정하고 앞으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있어서 한글로 표기하기로 하고, 이미 제정된 부령은 1969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한글화작업으로 마치고 법률에 대하여도 한글화하도록 노력하였다<sup>56)</sup>. 그리하여 정부의 모든 공문서를 비롯하여 법령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공문서규정(1969. 5. 2. 대통령령 제3923호)』을 개정하고 법규문서의 표기에 있어서도 한글로 띄어서 가로쓰며, 한글맞춤법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령의 한글화추진은 1970년말까지 대통령령 1,924건, 총리령·부령 748건 등 총 1,722건에 이르렀으나 법률의 한글화는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sup>57)</sup>.

### 2) 법령용어정비요강의 제정

법령의 한글화작업은 현행법령의 한자용어로 된 문장을 그대로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한자용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화할 경우 그 뜻을 알 수 없거나 다른 뜻으로 해석될 염려가 있는 용어에 대하여는 알맞게 우리말로 바꾸어 쓰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칙아래 법제처에서는 그 세부적인 지침으로서 1969년 5월 『법령용어정비요강』을 마련하였다.

### (3) 법령용어정비기준의 제정·추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법제처를 중심으로 진행된 꾸준한 법령정비 작업은 1972년 7월에 『법령용어정비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법령용어의 순화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또한 1973년 7월에는 법령상의

56) 법령의 한글화작업에 따른 용어정의의 구체적인 자료는 법제처, 법령의 한글화작업에 따른 용어정리, 1973. 7., 참조.

57) 국무총리훈령 제68호(1968. 12. 24)에 의하여 1970년 1월 1일부터 한글전용을 지시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는 법률도 한글전용을 추진하였으나 1973년도 법제처장 입회하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요청과 반론에 의하여 한자혼용의 방침을 정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권영민, 입법실무, 연수사, 1977, 31면).



관용어사용 원칙·법령상의 외래어·한글바로쓰기·법령한글화작업 채택 용어·참고자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용어의 통일』에 관한 지침을 발간·배포하였다. 이러한 제1차 법령용어정비기준에 의하여 법제처에서는 계속적으로 법령용어정비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도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인 용어와 국민감정이나 시대감각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가 우리 법령의 내용 중에 쓰이고 있어 국민들이 법령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의하여 1983년 4월에 제2차로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을 제정하여 법령용어의 순화업무지침으로 관계 부처에 통보하였다. 제2차로 제정된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은 종전의 법령정비 및 한글화 추진이 대부분 일본식 표현을 바꾸거나 한자용어의 한글화 등 형식적인 면을 중요시하였으나 새로 제정된 정비기준은 법령용어를 될 수 있는 한 쉬운 말로 쓰고,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4) 현행법령정비사업

법령정비사업은 1961년도에 구법령정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식법령을 전부 우리 법령으로 정리한 바 있고, 1969년도에 법령 한글화 작업으로 대통령령 이하의 법령을 모두 한글로 정리한 바 있으나, 이는 과거의 법령을 현대화하는 형식적 의미의 정비에 불과하였으므로 법령상호간의 모순·저촉 등 불합리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현행법령정비사업은 1977년부터 2년간에 걸쳐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1차 검토하여 정비한 바 있다. 그 결과는 총 2,790개 법령(법률 675·대통령령 1,210·총리령과 부령 905)을 검토하여 그 중 288개 법령에 대한 정비안을 작성,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정비하였는데 1978년까지 정비 완료한 것이 154개 법령이며 나머지 131개 법령은 정비내용이 경미한 것으로 그 후 다른 개정요인이 있을 때 정비하도록 하였다.

## 2.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추진실적

### (1) 용어정비 추진절차

법령용어정비의 추진절차는 정비대상용어의 수집단계, 관련기관의 검토단계, 최종확정단계 등 크게 나누어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sup>58)</sup>.

#### 1) 정비대상용어의 선정

법령용어순화정비업무는 그 기본방침으로서 일상생활공용 법령용어정비의 추진과 고유법령용어정비의 2가지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의 용어정비·개선에 중점을 두고, 후자는 고유법령용어 검토 및 대체용어를 선정한 다음 이를 보다 신중히 하기 위하여 법령용어심의회 1차 심의를 거친 다음, 학계·전문가의 자문회의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행정용어순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한 후 국무회의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정비대상용어의 산정방법은 '법제처 자체정비안'과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정비안'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 2) 정비대상용어의 관련기관 검토 및 공고

법제처작성 자체정비의견과 관련기관 정비의견을 종합한 정비대상용어 자료집을 관련기관과 관련연구단체에 발송하여 정밀검토하고, 이를 비교·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문제가 있거나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법령용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법제처에서 심사·확정된 법령용어순화정비자료집(안)은 정부 행정용어순화위원회에 통보하고,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관보에 공고하여 일정기간 예고하여 국민일반의 의견을 취합한 후 이를 다시 재검토·정리한 다음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최종확정하며, 확정된 법령용어에 대해서는 『법령용어순화편람<sup>59)</sup>』을 발간·배포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58)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122면 이하 참조.

59) 법령용어순화편람은 1985년 제1집이 법제처에서 발간된 이후 2002년에 제7집이

## (2) 세부추진내용과 실적

## 1) 법령용어정비의 기반조성(1983-1986)

법제처에서는 정부수립이후 추진하여 오던 법령용어정비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활성화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법령용어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상생활공용법령용어 정비·개선’을 위하여 법제관실로 하여금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대상용어의 검토를 통한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법령정비총괄담당관을 을 반장으로 하고 법제관실 사무관을 반원으로 하며 법제기획관실 사무관을 간사로 하는 법령용어실무작업반을 두었다.

작업추진은 소관별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개선이 필요한 법령용어는 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확정·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원·부·처와의 공동정비계획을 추진하여 소관법령검토 및 대체용어를 선정하여 법제처 법령용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 채택된 용어를 확정·시행하였다. 또한 고유법령용어의 정비·개선을 위하여 법령용어정비총괄담당관이 주관하여 고유법령용어 검토 및 대체용어 선정작업을 추진하여 선정된 용어에 대해 법령용어심의회 제1차 심의와 학계·정책자문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이를 다시 제2차 법령용어심의회를 개최하여 확정·시행하였다<sup>60)</sup>.

이후 1983년과 84년의 작업결과를 기초하여 1985년 법령용어순화편람 제1집을 발간하였으며, 1986년 법령용어순화편람 제2집을 발간하였다<sup>61)</sup>.

---

발간되었다. 동편람은 1996년 발간된 제6집까지 총 4,378개의 법령용어를 수록하였으며, 2002년에 발간된 제7집은 필수정비대상용어 2,068건을 선정하여 발간하였다.

60) 일상생활공용법령용어정비는 자체정비안 99개 법률 445개, 관련부처정비안 187개 법률 481개 등 총 286개 법률의 926개 순화정비용어를 선정하였으며, 고유법령용어 정비·개선은 695개 법령용어를 선정하고, 대체용어를 검토하였다.

61) 법령용어순화편람 제1집은 법률에서 추출한 대상용어 1,360여개 중 1,000여개의 용어를 선정하였으며, 제2집은 220여개의 대통령령에서 180여개의 대상용어를 재선정하여 발간하였음.

## 2) 법령용어의 민주화추진(1988-1990)

이 기간은 6·29선언 이후 헌법개정을 비롯하여 많은 법령을 새헌법의 민주화 이념에 맞도록 대폭적인 보완·정비하는 등 법제개혁이 크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법제개혁추진과 병행하여 법령용어 뿐만 아니라 법령에 쓰이는 일상생활용어 및 법령문장의 표기형식도 민주화 이념에 맞도록 순화정비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을 ‘법령용어의 민주화 추진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sup>62)</sup>.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자체정비안을 작성하여 정비대상용어를 선정하고 ‘법령용어순화정비대상자료집’을 발간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있어서 법무부제출 정비의견은 민법·민사소송법·형법 등 총28개 법령을 검토하고, 62개 정비대상용어를 선정하였는 바, 주로 ‘용어의 민주화’ 측면이 강조되었으며, 재무부제출 정비의견은 물품관리법 등 25개 법령을 검토하고, 162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주로 ‘용어의 명확화’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sup>63)</sup>. 이러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법제처는 1820여건(1986년 이전 정비 1,180건, 1990년 추가 640건)의 용어가 수록된 ‘법령용어순화편람’ 제3집을 발간하였다<sup>64)</sup>.

## 3) 법령용어의 한글화 및 외래어정비(1991-1992)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동안 법령용어정의 기본방향이 용어의 민주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이었다면 1991년부터 1992년의 기간에는 그 기본방향을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용어의 평이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정비대상용어의 선정에서 한자용어의 조사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간한 ‘국어순화자료집’을 참고로 하였으며, 일상생활공용법령용어 1,054건,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외래어 122건 등

62)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128면.

63) 이외에도 교통부 31건, 동력자원부 28건, 농림수산부 22건, 내무부 20건 등 25개 기관에서 총 395건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64) 법령용어순화편람에는 ①법령용어순화정비자료 1,820건, ②법령에서 한글·한자사용기준 550건, ③헌법에서 한글사용례 171건, ④법령의 한글화작업시 채택용어 172건, ⑤법령의 한글사용례 782건 등 총 3,495건이 수록되었다.

모두 1,176건을 수록한 ‘정비대상용어자료집(안)’을 1991년 4월에 발간하였다.

#### 4) 법령용어의 표준화·명확화(1993-1994)

1993년부터 용어의 민주화 및 용어의 평이화에 이어 ‘용어의 표준화·명확화’와 ‘외래어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순화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총 1,020건의 용어<sup>65)</sup>를 선정하여 ‘법령용어정비대상자료집(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국회·법원·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의 검토의견과 각계 전문가의 자문 및 법령용어심의회<sup>66)</sup>의 심의를 거쳐 1994년 법령용어 순화편람 제5집을 발간하였다<sup>66)</sup>.

#### 5) 법령용어순화작업의 검토와 지속화와 다각화(1994 이후)

1983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법령용어순화작업은 1996년 법령용어순화편람 제6집을 발간함으로써 그 동안의 순화작업의 내용을 정리하고, 해당용어의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령에 있어서 해당용어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2002년 법령용어순화편람 제6집에 수록된 용어 중 필수정비대상용어 2,068건을 선정하여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을 발간함으로써 법령용어정비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제처에 국한된 법령용어정비순화작업의 내용의 충실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의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작업의 성과로서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용어정비사업단이라는 독립된 연구팀을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국문학적 입장뿐만 아니라 법학계의 입장과 학문적 내용을 수용하고자 하고 있으며<sup>67)</sup>, 국립국어연구원은 국어학적 관점에 있어서 법령용어순화

65) 법령용어(일상용어 포함) 772건 및 1993년 2월 1일 이후 공포된 법령을 대상으로 110건, 외래어 138건 등이다.

66) 법령용어순화편람 제5집에는 법령용어순화정비자료 3,880여건, 법령에서 한글·한자 사용기준 550건, 헌법에서 한글사용례 171건, 법령의 한글사용례 782건 등 전부 5,383건이 수록되어 있다.

67)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업단의 중요성과물로서는 실무와 학계가 공동으로 집필하는 법령용어에 대한 해설집으로서 2000년 이후 계속 발간되고 있는 ‘법령용어사례

작업과 관련된 연구작업<sup>68)</sup>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바, 다양한 실무적 경험과 학문적 성과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독립적 연구와 성과를 도출하였던 법제처 및 각 연구기관간의 성과물의 공유와 합리적인 법령용어의 정비와 순화를 위한 종합적인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

집'과 법령용어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법과 언어, 2001; 외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 2002) 및 전문가회의 자료집(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2. 5.; 현행법령용어에 대한 역사적 고찰, 2002. 7.; 개정민사소송법의 법령용어 및 법률문장의 순화와 향후과제, 2003. 4.), 워크샵자료집(사이버 법령에서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3. 5.) 등을 통한 학문적 성과를 축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연구자료로서 법률문화 및 법령용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입법학 용어해설집, 일본어식법령용어사례집 등을 발간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작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68) 국립국어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국어학계의 법령용어순화작업은 논문 및 발표회 등을 통하여 매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었으며, 최근 법조문의 문장실태조사(2001),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2002) 등의 자료집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 제 3 장 법령용어와 문장의 특징과 형식

### I. 법령용어의 개념과 특성

#### 1. 의의

일반적으로 법령용어라 함은 법조문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되더라도 특별히 그 의미의 차이가 명확히 의식되지 않은 용어 중 입법기술의 하나로서 법령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각각 특유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sup>69)</sup>. 그러나 법령용어는 이의 의미나 용법을 정한 법령이라는 것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법령용어의 범위와 내용의 규정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법령에 있어서 용어의 문제는 법령에 있어서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약속되어 사용하는 용어의 문제이다. 법령의 세계에 있어서 법령용어라는 특수한 영역의 용어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입법의 내용으로 해야 할 행정의 복잡다기화, 전문화는 당연히 입법자체에 반영되어야 함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며, 법령자체가 지닌 전문기술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고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령용어는 입법기술에 있어서 ①의미의 차이의 명확화, ②조문구조의 명확화, ③표현의 간략화, ④조문 상호간의 관계의 명확화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법령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sup>70)</sup>.

이상과 같은 기준에 기초하여 아래에서는 법령용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례를 기준으로 그 유의사항과 몇 가지 검토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71)</sup>.

69)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59면.

70)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60-61면 참조.

71) 법령용어 사용의 실례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89, 1996 참조.

## 2. 법령의 상용문자

법령에서 상용하는 문자는 각국의 고유한 문자로 표현되며, 우리 법령에 있어서의 상용문자는 『한글』을 전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글전용에 관한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정부공문서규정』 제11조제1항은 ‘문서의 용어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쓰되, 표준말을 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법적으로 보면 대통령령인 정부공문서규정만으로는 법률의 용어를 기속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대해서는 『한글전용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공문서규정』 제39조제2항에서는 ‘법규문서 중 법률문서에 대하여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기관 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의 경우에는 한글·한자를 혼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제목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국·한문혼용원칙에 따라 국·한문을 혼용하며, 한글로 된 법률을 인용할 때에는 한글로 된 법률은 한글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한자사용의 범위에 관해서는 특별한 원칙이 없으나, 법령 중에는 법률분야 이외의 각종 전문적·학술적 분야의 전문어도 상당한 정도로 필연적으로 사용되게 되므로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를 전혀 무시하고 법문을 작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법령을 순수한 한글로 쓰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법제처에서는 『법령에 있어서의 한글·한자표기기준』을 마련하여 법령의 한글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sup>72)</sup>, 그 외에도 ①법령을 한글원칙에 따라 가급적 한글로 쓴다. 다만 한글로 표기할 경우 뜻이 혼용될 우려가 있는 용어는 한자로 쓸 수 있다. ②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법령에서는 한자 혼용기준이 통일되어야 한다. ③복합어는 모두를 한자 또는 한글로 쓴다.

72) 자세한 내용은 김승렬, 『법령한글화사업에 관한 소고』, 법제 제227호(1988. 4.), 19-24면 참조.



④가운뎃점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일반혼용원칙에 따라 혼용한다. ⑤법령용어의 한자·한글표기는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제안자의 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심의과정에서는 바꾸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sup>73)</sup>.

### 3. 숫자·외래어 및 부호

#### (1) 숫자

법령에 있어서 숫자는 법령공포시 반드시 그 법령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제명 이외에 법령에 번호를 붙이며, 법령의 내용에 있어서도 시행일·연령·수량·순위·계급·비율·기간·금액 등에서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숫자는 모든 법령과 분리할 수 없는 일체성을 이루며, 숫자의 사용은 오식·오기의 염려가 많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법령에 표시하는 숫자가 천단위 이상일 경우에는 한자 또는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별표 등에서 복잡한 숫자를 도표로 표시할 때에는 천단위 이상의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법령에서의 숫자사용과 관련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①수의 표현에 있어서는 1천, 1만, 10만, 100만, 1천만, 1억 등으로 표현한다. ②법령에서 서수는 반드시 「제」자를 붙이며 「제○장」, 「제○조」, 「제○항」 등으로 하여 숫자의 상하의 매듭을 명확히 표현한다. ③봉급표, 정원표 등에서 계수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④단위구분으로서 「배」는 1배, 2배 드응로 표현한다. ⑤분수를 문장 중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3분의 2 등으로 표현한다. ⑥기일 또는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는 1월, 2년 등으로 표시한다.

7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89, 111면 참조; 그러나 한글로 된 법률을 인용할 때에는 한글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며, 특히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법률을 인용할 때에는 전부 한글로 인용한다(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96, 163면 참조).

## (2) 외래어

법령에 있어서 외래어의 사용은 표현의 평이성이라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언어정책이나 국민의식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외래어는 되도록 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널리 상용되고 있는 외래어로서 바꾸어 쓸 우리말이 적절한 것이 없는 것은 그대로 쓸 수 있으며, 또한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외래어라 할지라도 외래어를 씀이 더 적절한 때에는 그대로 쓸 수 있다<sup>74)</sup>. 법령에서 외래어가 사용되는 경우로는 외래어가 하나의 부호로서 사용되는 경우와 외래어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외래어 본래의 의미를 분명히하기 위하여 외래어를 괄호쓰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조약에서는 외국어가 정본일 때에는 공포할 때 한글의 번역문 외에 외국어에 의한 정본이 동시에 공포되는 것이 그 예이다.

현재 우리 법령에 있어서 외래어의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제교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많은 법령용어가 외래어로서 그대로 법령용어로서 정착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관련용어나 과학기술과 관련된 용어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말 표현의 한계로 인하여 법령용어로서 외래어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하겠다. 따라서 법령입안에 있어서 외래어 수용의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이 되고 있으며, 번역용어간의 혼란으로 인하여 법령간의 용어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법령의 입안에 있어서 앞으로의 신중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sup>75)</sup>.

## (3) 부호

법문에서 사용하는 부호는 한글맞춤법에 따르지만 다소 특이한 용법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마침표와 쉼표’는 일행의 법문에도 필요하

74) 또한 외래어를 쓸 때에는 교육부 제정 외래어표기법에 의한다(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96, 168면).

75) 외래어 및 사이버관련 법령용어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이버법령에서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인터넷법학회 공동워크샵, 2003. 5. 참조.

며 이것은 부호라기 보다 오히려 자구 그 자체와 불가분의 의미상의 연관관을 가지고 자구와 일체가 되어 문자와 같은 작용을 한다. 마침표는 문장의 완결을 표시이지만, ①호나 목이 명사·대명사 드응로 끝나는 법문에는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며, ②호나 목이 명사·대명사 등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계속 단서로 이어질 때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하며, ③호나 목 또는 그 단서가 서술문으로 끝날 때에는 다시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용법에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쉼표의 사용법은 매우 복잡하고 그 용법은 어렵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둘째, 법령의 ‘부호’ 중 기술적인 법문의 의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호로서는 가운데점(·)·반점(,)·쌍점(:) 및 빗금(/)등이 있다<sup>76)</sup>. 가운데점은 - 원칙적으로 두개의 단어가 연결된 경우에는 ‘및’ 또는 ‘또는’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연결할 때와 의무상의 선후관계 등 연관성을 갖는 단어를 연결할 때 가운데점을 사용한다. 반점은 문장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내는 부호로서 주로 띄어쓰여져 있는 구절 또는 문장을 계속 연결할 때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가운데점과 구별되며, 쌍점은 종류의 구분, 설명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별표와 별표서식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sup>77)</sup>.

셋째, 부호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는 ‘괄호’가 있다. 맞춤법상 가로쓰기의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세로쓰기에는 낫표(『 』)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문에서는 가로쓰기이지만 낫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낫표는 말을 정의하는 경우, 다른 조문을 준용함에 있어 준용조문을 고쳐 읽는 경우 및 법문 중의 자구의 개정, 부가 또는 삭제하는데 그 부분을 표시하는 경우 등에 사용한다. 그리고 괄호(( ))는 소괄호·중괄호·대괄호가 있으며, 법문표현상 이것을 전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나 법문의 이해를 어렵게 함으로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하튼 괄호는 그 앞의 용어를 요약하여 일종의 약칭 또는 보조

76) 법문에서는 빗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쉼표를 사용한다(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96, 169면).

77)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89, 14면; 동 1996, 169-171면.

적 정의를 정하는 경우, 그 앞의 용어에서 특정한 범위의 대상을 제외하는 경우, 그 포함되는 대상의 범위를 분명하게 하는 경우, 그것이 특정한 경우에는 별개의 것으로 바꿔 읽게 되는 경우 및 인용된 법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시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넷째, 법문 중에는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밑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별표의 제목에 밑줄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법령에는 기장이나 복제 등과 같이 그림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표를 사용하기도 하며, 수식 또는 방정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법문이 난해하고 복잡하게 되거나 정확한 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 4. 띄어쓰기

법문에 있어서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을 표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는 몇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①3원 20전은 ‘3원20전’으로, 말 한필은 ‘말한필’로, 나무 두 그루는 ‘나무 2그루’로, 1969년 3월 14일 하오 1시 30분은 ‘1969년 3월 14일하오 1시30분’으로 한다. ②한글 학회는 ‘한글학회’로, 덕수 국민 학교는 ‘덕수국민학교’로 한다. ③‘기간이내에’, ‘구역안에서’, ‘기일이전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생중에서’, ‘30일이상’, ‘20일이하’, ‘법 제4조제1항 및 제3호 내지 제6호’는 여기에 쓴대로 쓴다. ④‘법령의 제호는 붙여쓴다’라는 것 등이 그것이다<sup>78)</sup>. 그러나 이 점에 관해 법령문의 띄어쓰기는 일반국민의 이해를 위하여 한글맞춤법 원칙에 대한 예외는 가급적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위의 특례에 대해 ‘3원20전’, ‘기간이내에’, ‘구역안에서’, ‘기일이전에’는 각각 ‘3원 20전’, ‘기간 이내에’, ‘구역 안에서’, ‘기일 이전에’로 하는 것이 보다 한글맞춤법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sup>79)</sup>.

살펴보건데, 법령문의 띄어쓰기에 있어서 한글맞춤법에 대한 예외는 가급적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78)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89, 12면.

79) 국회사무처, 『법제실무』, 1990, 108면.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있어서도 특별히 그러한 예외를 인정할 실익이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법령입안에 있어서 과거의 관행적인 기준을 기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일반 국민의 국어사용의 기준을 법령이 뒷바침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글학회』나 『덕수국민학교』와 같이 띄어쓰기의 예외를 통하여 어휘의 단일성을 유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법령의 제목에 대한 띄어쓰기의 예외 역시 이러한 단일성 유지를 위한 하나의 예외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의 특별법령 등의 제정에 있어서 법령명의 자수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명의 붙여쓰기가 법령명을 통한 법령의 핵심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불편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새로운 법령명의 사용방법에 대하여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I. 법령문의 문장구조와 기본형식

### 1. 법령문의 특색과 문장구조

#### (1) 법령문의 특색

법령문은 법규범을 문장화하는 것으로서 문장구조에 있어서 논리성·추상성·간결성·명확성·유형성 등 많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sup>80)</sup>. 법령문은 법규범의 내용을 문장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현실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사안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후에 일절의 불필요한 것을 배제하여 요건과 효과를 간결·명료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령문은 요건과 효과라는 필요한 요소이외에는 전부 이를 배제하며, 구문도 간소한 1조(항) 1문장이라는 단문형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법령특유의 법령용어가 사용되며, 구독점 사용방법 등에도 엄격한 원칙이 존재하고 있다. 나아가 오랜 기간에 걸친 입법기술적 검토의 성과로서 인허가에 관한 규정, 처벌규정 등에서도 대상사항의 내용에 상응하

80)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28면.

여 일정한 형식이 갖추어져 있다<sup>81)</sup>.

## (2) 법령문의 문장구조

법령문은 1조(그 조가 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1항)는 1문으로 완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일조일문주의). 다만, 일조일문주의의 예외로서 전단·중단·후단·본문·단서의 형태를 구비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령이 아주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조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sup>82)</sup>.

법령문에 있어서 주어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제시하기 위하여 조문의 모두에 두는 것이 통례이나, 가정적 조건을 나타내는 중문이 있어서 이것이 장문일 경우에는 주문의 주어와 중문을 교체하여 주문의 주어와 술어가 직접 연결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법령문에서는 반드시 주어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이를 생략하는 사례와 목적어를 도치하여 이를 주어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법령문의 술어는 그 내용에 상응하여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된다. 종래의 법령문에는 난해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일상용어에 사용되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각각 법규범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의 기술성의 관계나 법령이 지닌 독특한 표현 등 때문에 일상용어와는 다른 법령상 사용되는 법령용어가 있다. 법령문의 술어상 표현의 특징을 예를 들면, 「할 수 있다(없다)」,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다, 하지 아니한다」, 「예에 의한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추정한다, 본다<sup>83)</sup>」, 「준용한다, 적용한다」 등의 표현이 있다<sup>84)</sup>.

81) 우리 현행법령에서 정형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과태료규정」, 「청문규정」, 「양벌규정」, 「과징금규정」, 「부담금규정」, 「벌칙 및 통고처분규정」, 「결격사유규정」, 「공무원의제규정」, 「위원회규정」 등이 있다.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심사사례집-체계·형식·자구-, 1993, 147-161면 참조.

82) 예를 들면, 「년호에관한법률」, 「한글전용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83) 「본다」라는 술어의 사용은 「간주한다」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본다」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법규와 관련된 용어에 여전히 「간주한다」라는 용어의 사용례를 볼 수 있다. 현행 법령 중 2003년 현재 「간주한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 경우는 30개 법령에 65개 조문에 이르고 있다.

84) 술어의 법령내 구체적 적용사례에 관하여는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31-33

## 2. 법령문의 기본형식

법령은 법문구성상 뿐만 아니라 그 형식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술과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지만, 법령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식을 취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일정한 규칙이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령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준으로는 법이 법다운 모양을 갖추도록 짜임새가 있어야 하고, 법의 적용대상인 일반국민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문이 그 전체적인 면에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는 『순서의 원칙』과 법령의 불필요한 조항을 설정하거나 수식을 달거나 표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축소·의제·준용·변환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경제의 원칙』 등이 요구된다<sup>85)</sup>. 그리고 이 양원칙에 입각하여 입법자가 입법시에 고려하여야 할 문제로서는 입법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분배하는 『분배의 문제』, 서로 유사한 유형이나 내용을 순서에 따라 분류하는 『분류의 문제』, 법형식이 수직적 일관성, 즉 법질서가 총괄성·통일성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순서의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sup>86)</sup>.

일반적으로 성문법주의법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령이 일정한 형식을 갖는데 필요한 기준 내지 지침을 마련하여 실제 법령입안에 반드시 그에 따르고 있으며<sup>87)</sup>, 우리나라에서도 법제처에서 그 동안 입법관행으로 되어왔던 것과 실무상 축적된 결과를 종합하여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총무처에서도 『행정법령입안업무요령』을 작성하여 법령입안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법제실무』 등을 발간하고 있다.

면 참조.

85) 박봉국, 입법의 이론과 실제, 입법조사월보, 1989. 1., 11면 참조.

86)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박영도, 입법이론연구(I)-입법기초이론과 입법기술-, 한국법제연구원, 1991, 187-189면 참조.

87) 미국의 경우는 각주의 헌법에서 제정문의 형식, 주제, 용어의 표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법제사무처리의 행정적 기준으로서 『OMB규정 4019』를 두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법률안 및 제명령작성에 관하여 수상훈령으로 그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내각법제국에서 발간한 『法令審査事務提要』가 있다.

이러한 원칙적 기준에 근거하여 법령문은 형식적인 체제면에 있어서 크게 본칙과 부칙의 구분하며, 그 구체적 체제는 편·장·절·관·목으로 세분하여 구성된다. 본칙의 기본적인 구성은 조·항·호·목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은 항 또는 조로 구분하되 5개항 이하인 경우에는 항으로, 5개항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로 구분한다. 다만, 1개항일 경우에는 항으로 구분하지 아니하며, 부칙을 항 또는 조로 구분할 때에는 각각 제목을 붙인다<sup>88)</sup>. 또한, 구체적인 조와 항에 있어서 법문을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경우에 있어서 앞부분을 전단, 뒷부분을 후단이라 하고, 하나의 조 또는 항 가운데 문장을 구분하는 경우 후단이 전단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단을 본문, 후단을 단서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간편한 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조 가운데 삽입된 표와 법령의 말미에 두는 별표라는 형식의 표가 있으며, 별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1, 별표2 등으로 표시한다. 별표와 유사한 형식으로 부록·양식·서식·도표 등이 있는데, 법률보다는 시행령·시행규칙에 주로 사용되며, 어느 것도 별표와 같이 각각의 법령의 부칙 다음에 두며, 별표가 있는 때에는 별표 다음에 둔다.

한편, 법령문의 내용적 배열방식은 제명·목차·전문·본칙·부칙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해당 법령의 내용에 따라 배치하고 있다<sup>89)</sup>. 특히, 본칙에 있어서는 총칙에 관한 사항, 실체규정에 관한 사항, 보칙에 관한 사항, 별칙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다. 총칙적 규정으로서는 목적규정, 취지규정, 정의규정, 해석규정 등이 설치되는 예가 있으나 최근의 규제적 입법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는 예도 발견되고 있다. 실체규정에 관한 사항은 총칙적 규정에 이어서 법령의 주된 내용인 실체규정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각 법령의 본체부분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실체규정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속법규, 조성법규, 자격수여법규 등의 세가지 유형으

88) 부칙을 조로 구분하는 경우 그 조의 조명에 대하여는 본칙과 같이 조명을 붙이는 방법과 부칙은 부칙대로 따로 조명을 새로이 붙이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본칙과 통번으로 하지 않고 따로 조명을 새로이 붙이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89) 법령문의 내용적 배열방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박영도, 입법이론연구(I), 187-279면 참조.



로 나누어진<sup>90)</sup>. 보칙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본체를 이루는 실체적 규정의 다음으로 벌칙에 앞서 그 실체적 규정에 부수하는 사항이나 절차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보칙적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sup>91)92)</sup>.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칙사항 다음, 즉 본칙으로서는 말미에 배열하지만, 벌칙수가 적을 경우에는 보칙의 장 속에 포함시키거나 실체규정의 장 속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것은 바람직한 입법례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법령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실체규정과 보칙규정을 전부 배열한 다음에 배치하며, 벌칙조항 상호간에는 법정형이 무거운 것부터 순차로 배치하고, 만약 같은 벌칙조항에서 둘 이상의 실체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조명이 빠른 것부터 배열한다. 부칙에 관한 사항은 본체적인 규정을 제외한 부수적·경과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으로서 법령의 시행기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관계법령의 개정폐지의 조치 등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법령의 시행지역에 관한 규정이나 그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sup>93)</sup>. 그리고 부칙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 대단히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부칙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가운데 시행기일에 관한 부분 이외의 부분을 독립시켜 단독입법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며<sup>94)</sup>, 어떤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

90) 고명윤, 법제실무의 기본개념, 국회보 1983. 9., 80면; 박봉국, 입법의 이론과 실제, 입법조사월보 1989. 1., 16면; 한문수, 입법실체론(상), 입법조사월보 1974. 5., 47면; 국회사무처, 법제실무, 1990, 190면 이하; 박영도, 입법이론연구(I), 198면 이하 참조.

91) 일반적으로 보칙에 관한 사항이 장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보칙』이라는 장명을 두지만, 실체규정의 영역 가운데 두는 예도 있다.

92) 일반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보칙적 규정으로서는 ①보고의 제출(자료제출의 요청), ②출입검사 또는 조사, ③청문, ④처분의 부관, ⑤이의신청, ⑥행정심판·행정소송, ⑦손실보상, ⑧권한의 위임, ⑨수수료, ⑩관계인의 의견청취, ⑪심의회 기타 부속기구의 설치·조직·운영, ⑫관계행정기관과의 협조·조정, ⑬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가운데 필요한 것을 둔다(자세한 것은 박영도, 입법이론연구(I), 208면 이하 참조).

93) 일반적으로 부칙에 규정되는 사항의 규정순서는 ①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②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③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④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⑤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⑥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⑦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⑧기타 규정의 순서에 의한다(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31면).

94)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35면; 보통 『○○법시행법』이라는 형식을 취하며, 이

여 상당히 많은 다른 관계 법령의 개폐가 필요한 경우에도 단독입법을 제정하는 경우도 있다<sup>95)</sup>.

### Ⅲ. 법령문의 표현기준

법이 성문법으로 일단 성립하면, 성문법상의 문자·문장 등으로 표현 되는 것에 의해 인간의 권리의무가 규제되고, 사회·경제·문화 등의 제반활동이 영위되며, 국가기관의 행위가 규율되어 공행정이 실현되는 것이다<sup>96)</sup>. 따라서 법령의 표현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입법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타당하며 정책결정자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sup>97)</sup>.

이와 같은 법령의 표현·입법의 형식면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sup>98)</sup>, 결국 법령의 표현방법은 규율대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입안자는 제정권자가 의도하는 입법의 내용이 「정확」하고, 「명료」하게, 또한 「평이」하게 표현되도록 용자·용어 및 문체를 작성하도록 노력

---

경우에도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은 모법의 부칙에 남기는 것이 보통이나, 「이 법률의 시행일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시행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95)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35-126면; 일반적으로 「○○법시행에따른관계법률의 정리에관한법률」의 형식을 취한다.

96) Harald Kindermann, *Gesetzessprache und Akzeptanz der Norm*, in: Ders.(Hrsg.), *Recht und Sprache*, aaO., S. 56f.

97) Rudolf Wassermann, *Die moderne Gesetzessprache als Ausdruck politischer Kultur*, in: Th. Öhlinger(Hrsg.), *Recht und Sprache*, aaO., S. 38.

98)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 제29장에서 법제정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법의 문체는 간단해야 한다...법의 문체는 평이해야 한다...법의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법이 무언가를 고정시켜 두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그것을 금액으로 정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어떤 법에서 사물의 관념을 확정했을 때는 결코 모호한 표현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법은 또한 너무 정묘해서는 안된다...충분한 이유없이 법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법은 그 효과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개개의 협정에 의해서 법과 다른 협약을 맺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법은 청정함이 필요하다...』(Montesquieu, *L'Esprit des lois*, Larousse, 1995, pp. 203-206; 이명성 역, 『법의 정신』, 홍신문화사, 1996, 445-446면); 최대권, 『헌법학-법사회학적 접근-』, 박영사, 1989, 350면 이하 참조.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입법표현에 있어서 명확성에 강조를 두는데 비하여, 영미에서는 확실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 1. 표현의 명확성

표현의 명확이라는 것은 입법자가 그 법령에 담으려고 하는 범규범의 내용이 독자에게 그 법문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와 문장으로부터 그 소기하는대로 틀림없이 받아들여지게 하려는데 있는 것이다<sup>99)</sup>. 그러나 입법관계자가 어떻게 유의하여 신중한 법문을 작성하더라도 그 법문을 실제의 구체적 사건에 해당하려는 경우 그곳에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 ①문자·문장에 의한 표현능력의 한계, ②지나치게 세밀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욕, ③전문용어의 사용, ④법률에서 복잡다단한 사실관계규율, ⑤진부하고 기계적인 법안의 작성, ⑥입안자의 자만심, ⑦입법과정 중 정치적 이유나 타협 등으로 인한 본래의 법문의 변질 등으로 인하여 정확성이 결여된 입법이 발생하게 되기도 한다<sup>100)</sup>.

언어표현상의 명확성에 관하여 문제되는 것은 불명확함(vagueness, Unbestimmtheit)과 다의성(ambiguity, Vieldeutigkeit)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언어에 있어서 명확함이라는 의미는 동시에 상대적 불명확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다의성의 개념으로 전환되어 지는 것이다. 이것이 곧 법학의 숙명적인 난관으로서 작용되어지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엄밀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언어의 표현수단을 의지한다는 것이며, 다의성의 문제는 신중한 입법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어도 불명확성의 문제는 자연언어의 성질상 원리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표현하려는 복잡한 개념을 전부 포괄하는 정확한 의미의 전문용어가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전문용어는 충분하게 존재하지 않

99)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49면.

100) H. Hill, Einführung in die Gesetzgebungslehre, Heidelberg, 1982, S. 129f.

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전문용어가 완전히 있더라도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즉, 어휘는 새로운 용어를 공급하기 위하여 방대하게 확대되지 않을 수 없으며, 정확한 전문용어가 사용될 수 없는 영역을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문제로서 실현가능한 정확성을 확보하는 다른 수단이 필요하며, 불명확성의 이용은 그 하나의 수단이다. 즉, 몇 개의 일반용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중복된 부분에 그 의미를 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정확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sup>101)</sup>.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 법령용어의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법률언어의 기초로서의 ‘일상언어’와 ‘일상화된 전문언어’ 및 ‘인공언어’를 구분하여 법률언어의 명확화의 기준은 일상화된 전문언어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sup>102)</sup>. 이것은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률은 시민이 사회적 생활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언어를 기초로 하지만, 법률이 생활의 지평을 넘어선 복잡한 사회현실을 규율하는 데 필요한 법률전문언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단계에 있어서 사용되는 특수화된 일상언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일상언어화’된 전문언어에 국한하여야 하며, 인공언어나 일상화되지 않은 특수화된 전문언어의 사용은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103)</sup>.

## 2. 표현의 평이성

법이 지배자의 지배수단이었던 봉건시대 내지 전제군주시대와는 달리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법은 국민의사의 표현이므로 민주적인 성격을 가질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입법의 민주화, 법령의 민주화의 일환으로서

---

101) 표현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그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명확성의 산술적인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부득이 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1992. 2. 25. 결정 89헌마104).

102) 이상돈, 형법학, 법문사, 1999, 191면 이하 참조.

103) 이상돈, 형법학, 197-198면 참조.

법의 평이한 표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법령의 표현의 평이화라는 요청과 더불어 고려하여야 할 점은 법령의 자구가 성문화된 권리의무의 규범이라는 법령으로서의 성질에서 생기는 기술적인 제약이다. 먼저, 법령에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서로 상위·하위의 관계, 전법·후법의 관계 및 일반법·특별법의 관계 등이 있으며, 각 법령은 이러한 관계에서 각각 논리적으로 통일된 법질서의 일환으로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표현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한 법령자체에 있어서도 법규범으로서의 논리적 통일, 동일한 의미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동일한 자구의 사용, 후문의 전후관계의 명확한 표현 등이 요청된다.

이와 같이 법령의 표현방식에는 법령자체의 성질에서 생겨나는 특수한 요청과 국민에게 이해가능하기 위한 평이성이라는 것은 상호 모순된 두 가지의 명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104</sup>). 법령으로서의 기술적 제약에서 일반일상용어에 의한 구어체가 반드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법령의 규정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생활현상자체에서 반드시 평이한 용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아무리 평이한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용과 경우에 따르는 것이며 복잡한 현상을 파악하는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난해한 전문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sup>105</sup>).

법령용어 사용의 평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법언어는 근대법의 문법적 기초가 되는 주관적 권리의 명증성에 있어서 의미론적 명확성이 매우 미약하며, 이는 의미론의 식민지화에 따른 권력지배의 도구로서의 법과 법언어가 사용되어 왔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법언어가 시민들의 삶의 세계를 구성하는 자연언어로부터 발달하지 못하고, 권력자들에 의해 철저하게 지배의 도구로서 발달한데 기인한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화에 따른 의용법체계의 산물이면서 해방이후에도 일본식 한자사용과 중국의 한자문화에 깊이 각인된 언어가 계속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령용어의 평이화는 단순히 법령의 용어와 문장이해의 평이화에 한정된 것이 아닌 법언어의 식민지배와 법령에 대한

104) Wilibard Liehr, Verständliche Gesetzestexte, in: Th. Öhlinger(Hrsg.), Recht und Sprache, aaO., S. 175.

105) 입법기술연구소 편, 법제실무연수자료집, 1989, 178-180면 참조.

주체성을 높이는 것이라 하겠다.

### 3. 명확성과 평이성의 상관관계

법령에 있어서 표현의 기본원칙으로서의 『명확성』과 『평이성』은 어느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사안의 본질에 비추어 표현의 명확성이라 할 것이다<sup>106)</sup>. 물론 입법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한 이 양 원칙을 양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의 명확성을 위하여 표현의 평이성을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법령의 대상자체의 복잡성·기술성·전문성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것을 무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입법에서 간결한 표현이 강조되면서 함축성있는 표현이 많이 규정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이 가능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평이성으로 통하는 경우도 많다.

법령용어나 입법기술이 일반인에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독선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당연하며, 어느 정도 법령을 읽는 일반인이나 법령의 문외한인 사람들도 관용되는 어구나 형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정확히 법령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노력할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용되는 자구와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조건하에 법령에 사용되는 용자·용어 및 입법형식은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검토·선택되어야 한다.

---

106)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55면.

## 제 4 장 법률용어와 문장에 대한 검토와 과제

### I. 법령용어와 문장에 관한 검토기준

#### 1. 서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고, 명확·간결하게 하기 위한 법령용어순화정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 법제처를 중심으로 국어연구자는 물론 법학연구자들의 연구 및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법령에 쓰이는 용어 중에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 시대성에 맞지 아니하는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용어와 외래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부적절한 법령용어에 대한 순화와 정비작업은 법제의 민주화와 법률의 생활화를 위한 기초적인 과제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에 먼저 그 동안 법제처에서 제정·시행하여 온 ‘법령용어정비요강’과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용어의 민주화, 용어의 평이화, 용어의 명확화, 용어의 표준화라는 기본방향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sup>107)</sup>.

용어의 민주화라 함은 법의 지배 내지는 법률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적극국가화의 경향은 법규의 과잉화 내지 법화로 인하여 법규제의 경직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용어가 생기게 되며, 이러한 법률용어의 경직화 현상에 대하여 국민감정과 시대성에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용어의 민주화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용어의 경직화에 대하여 이를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출두·하명·하달 등의 권위적 용어를 출석·명령·알림 등의 민주적 용어로 전환하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용어의 평이화라 함은 기존의 문어체 중심의 법령용어에 대하여 구어체로의 용어전환을 통하여 종래의 난해한 용어를 좀 더 구어체에 가까운 용어로의 전환을 통하여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107)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120-122면 참조.

우리나라에 있어서 용어의 평이화는 기존에 사용하는 어려운 한자용어를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한글화와 풀어쓰기 및 쉬운 한자로의 전환에 그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08)</sup>. 예를 들면, 구거(溝渠)·감능(機能)·건정(乾淨) 등의 어려운 한자어를 도랑·감당할 능력·자물쇠 등의 평이한 용어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의 명확화라 함은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 법에 사용되는 언어의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부정확하고 애매모호한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적·보편적 용어의 사용을 통하여 신중하게 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법령용어에 있어서 명확화는 난해한 용어나 약어 등의 명확화뿐만 아니라 동음이의어나 다양한 쓰임의 용어에 대하여 그 뜻을 단일화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09)</sup>. 예를 들면, 공용·잡칙 등의 용어를 공동사용·보칙 등으로 풀어쓰거나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사위·허위 등과 같은 용어를 허위 등으로 통일하여 명확화·단일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용어의 표준화는 법조문에 사용되는 문장표현에 대하여 한글맞춤법·표준어규정이나 외래어표기법 등의 기준에 근거하며, 고유명사·학술용어·전문용어의 표기는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용어표현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10)</sup>. 예를 들면, 회계년도(會計年度)·귀절(句節)·도시가스(gas) 등의 용어를 회계연도·구절(句節)·도시가스 등으로 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 2. 법령에서의 한글화 확대

그 동안 법령에 있어서의 용어와 문장표기의 기준은 ‘한글맞춤법·표준어규정’(문교부, 1988년 1월 19일)과 ‘한글표기용례집’(법제처, 1988년 5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물론 ‘한글전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령은

108) 이러한 한자용어의 평이화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중등교육을 받은 정도의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말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박갑수, 법률용어·문장 왜 이리 어려운가, 언론비평 1988. 7., 76-77면).

109)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 제5·6항.

110) 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 7·8·9항.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대통령령과 부령은 모두 한글로 표기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률의 경우에는 한글·한자를 혼용하는 법률이 다수 존재한다. 2003년 법제처에서는 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보호법 등을 제외한 모든 법률을 한글화하기 위한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sup>111)</sup>. 동법률(안)에 의하면 모든 법률을 모두 한글로 표기하며, 한글로 표기할 경우 그 뜻에 잘 통하지 않는 한자에 한하여 괄호를 통하여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였다<sup>112)</sup>.

이것은 그 동안 ‘한글·한자사용기준’<sup>113)</sup>에 관한 일정한 원칙과 어려운 한자사용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개별법률에 대한 한글화 개정작업의 어려움을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법령의 한자어 사용에 대하여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단순히 한자를 한글로만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령용어순화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법 입법예고된 병기한자에 대한 예시는 특정법률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병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시된 병기용어가 다른 법률에 사용될 경우에 이를 병기할 것이지, 한글로 그대로 표기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현행 입법예고된 법률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매우 부실한 입법이 될 전망이다<sup>114)</sup>.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에 있어서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와 정비작업은 매우 좋은 본보기가 되는 바, 실무계와 학계는 물론 국어학계와 법학계간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전개함으로써 순화작업에 대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인정받고 있다<sup>115)</sup>.

111) 동법률(안)은 2003년 법제처에서 발의한 법률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며, 2003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하여 공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112) 한자병기 용어에 관한 예는 부록 참조.

113) 한글·한자사용기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141면 이하 참조.

114) 예를 들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9조 수액(數額)을 유일하게 병기용어로 예시하고 있으나, 수액(數額)은 법원조직법 제66조 제2항 제1호에도 쓰이고 있는 바, 현행 법률(안)에 의하면 가담법에 있어서 수액은 이를 ‘수액(數額)’으로 한자병기하여야 하지만, 법원조직법은 ‘수액’으로 한글로만 표기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각 법령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한자어에 사용례와 그 순화의 내용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sup>116)</sup>.

附屬島嶼(헌법 제3조) → 부속섬(소속된 섬, 거기에 딸린 섬들), 立脚한(헌법 제4조) → 바탕한, 闕位(헌법 제68조 제2항, 제71조) → 공석(빈 자리), 哨兵(헌법 제27조 제2항) → 보초, 駐留(헌법 제60조 제2항) → 주둔, 모해할 목적으로(청원법 제10조) → 해칠 목적으로, 瑕疵(상법 제69조) → 흠, 順次로(상법 제138조) → 차례로, 實費額(상법 제405조) → 실제지출비용, 券面額(상법 제473조) → 액면가, 自然消耗(상법 제678조) → 자연적 손해, 翌日(어음법 제24조) → 다음 날, 到來하다(할부거래법 제11조) → 이르다(되다), 軌條(공장저당법 제15조) → 철길(레일), 裸垆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8조) → 빈 집터, 落雷(지방세법 제41조) → 벼락, 短靴(경찰복제에관한규칙 제6조) → 구두, 名札(병역법시행령 제61조) → 이름표 등이 있다.

### 3. 일본어식 법령용어의 정비

일본어식 법령용어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우리나라 법령에 있어서 커다란 숙제 중의 하나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겠다. 우리 법령에 일본어식 법령용어의 영향은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근대 법학의 이론적·실무적 내용을 계수함으로 인한 것이다<sup>117)</sup>. 이를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18)</sup>.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 이후 일제는 ‘조선에서행할법령에관한

115) 민사소송법의 순화작업과 관련된 절차와 내용에 관하여는 한국법제연구원, 개정민사소송법의 법령용어 및 법률문장의 순화와 향후과제, 전문가회의자료집, 2003. 4. 30., 참조.

116) 한자어의 순화와 관련된 내용은 법제처,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 2002 참조.

117) 법학관련 외국법 계수에 대하여는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수용사, 박영사, 1982; 동, 한국의 법률가상, 길안사, 1995; 동, 한국법학사, 박영사, 1990;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사학논저목록 1945-1990, 1992; 동, 한말법령체계분석, 1991; 전봉덕, 한국 근대법사상사, 박영사, 1981; 안기성, 한국 근대교육법제연구,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4; 김효진,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철학과 현실사, 1996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118)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150면 이하 참조.

건<sup>119)</sup>을 제정하여 일본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칙령’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사항은 조선총독부의 명령(制令)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령의 제·개정에는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천황의 勅裁를 받아야 하며 임시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총독이 이를 즉시 발할 수 있으나 후에 勅裁를 받도록 하였다<sup>120)</sup>. 이에 따라 제령 제1호 ‘조선에있어서법령의효력에관한건’<sup>121)</sup>에서 ①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일본의 칙령, ②칙령에 의하여 의용되는 일본법률 및 조선총독부에서 발한 명령을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일제통치 36년간 우리나라는 일본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다<sup>122)</sup>.

그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 부터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기까지 미군정이 통치하는 과정에서 일제식민지법제를 부분적으로 일제법령의 폐지를 선언하는 미군정법령 제11호 ‘일제법규의 일부개정폐기의 건’을 1945년 11월 9일 공포하였다. 이로써 미군정의 입법정책의 기본방향을 확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법령에 관하여는 미군정법령 제21호 ‘법률제명령의존속’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명시적으로 폐기된 법령을 제외한 일제의 법령은 그대로 효력을 존속하게 되었다<sup>123)</sup>. 그 이후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제헌헌법 제10장 부칙 제100조에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까지는 일본법령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일제의 영향에 의하여 법령용어에 있어서도 여전히 일본어식

119) 1910. 8. 칙령 제324호.

120) 제령은 총독부의 해당부서에서 입안하면 총독부 총무국기획실에서 이를 심의하고 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제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천황의 勅裁를 받아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총독부 총무국기획실은 제령 등 법안의 입안·심의뿐만 아니라 이를 해석·적용까지 하였다.

121) 1919. 10. 8.

122) 제령은 조선식민지배의 중추적 범형식으로 식민지배기간동안 총 676건이 공포되었는데, 이 중 제령을 개정하는 제령을 제외하면 270건이다.

123) 동 군정법령은 “모든 법률 및 조선구정부가 발표하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규칙·명령·고시 기타 문서로서 1945년 8월 9일 실행 중인 것은 그간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조선군정부의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모두 효력을 가지고 존속한다”(동법령 제1조 전단)라고 규정하였다.

법령용어가 그대로 차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법령의 제정과정에 있어서도 일본법령을 그대로 차용하는 사례로 인하여 일본어 번역의 오역으로 인한 잘못된 용어와 문장이 그대로 우리 법령의 용어로서 정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구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많은 일본어식 법령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이후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어식 법령용어의 정비작업을 꾸준히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어식 용어와 표현은 우리 법령에 존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초적인 법률마저도 여전히 일본어식 법령용어와 문장이 순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겠다<sup>124)</sup>. 아래에서는 현행 법령의 일본어식 용어에 대하여 반드시 순화하여야 할 용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sup>125)</sup>.

법령용어에 있어서 대표적인 일본어식 용어는 見樣(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서식, 届出(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 신고, 路肩(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76조) → 갓길, 滅失(민사소송법 제147조) → 없어짐, 加療(민방위기본법 제24조) → 치료, 當該(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 해당, 去來先(석유사업법시행령 제32조) → 거래처, 檢査役(신택법 제64조) → 검사인, 검사원, 見習(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 제3조) → 수습, 缺席届(국회법 제32조) → 결석신고(서), 高水敷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8조) → 둔치(마당), 炕, 爐(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 제817조) → 풍로, 화로, 口座(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계좌 등의 용어가 있다.

124) 민법의 일본어식 용어와 문장에 관하여는 김동욱, 일본어학의 관점에서 본 우리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2002. 5. 17., 237면 이하 참조.

125) 일본어식 법령용어에 대하여는 박영도,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1; 신각철, 법령에 쓰이고 있는 일본식 표기 용어의 정비,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 108면 이하 참조.

## Ⅱ. 법령용어에 관한 국어학적 검토와 과제

### 1. 서

법령용어 사용에 있어서 국어학적 검토는 법언어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실체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법학에 있어서 법령용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적 특징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법령용어 역시 우리말의 쓰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은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나 부자연스러운 표현, 뜻이 불분명한 문장 등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문장성분간의 호응관계결여, 조사나 어미의 오용 등 문법적 오류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이에 본 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법령에 있어서 나타나는 법령용어 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국어학적 입장에서 용어와 문장의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법령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국어학적 용어의 특성을 가지는 것과 법학분야에 있어서 나타나는 전문용어에 관하여 국어학계의 입장과 법학계의 입장을 상호 검토하여 올바른 법령용어의 사용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sup>126)</sup>.

### 2. 어문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례

#### (1) 맞춤법·외래어 표기법과 띄어쓰기의 경우

##### 1) 맞춤법·외래어 표기법

법령에 있어서 법령용어에 관한 맞춤법과 외래어의 표기기준은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문교부고시 제88-1, 1988. 1. 19.)에 따라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법제처에서는 ‘한글표기용례집’(1988)을 발간하여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대표적인 맞춤법 사용례는 -이,

126) 본 장에 있어서 국어학적 관점의 자료는 국립국어연구원의 김문오 박사의 ‘법조문의 문장실태조사’(2001)와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2002) 등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히의 구별, 두음법칙의 적용, 된소리 사용법, 사이시옷의 사용법, 어근과 어간의 사용법, 합성어 사용법 등에 있어서의 올바른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준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그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있어서 몇 가지 맞춤법과 외래어 사용에 있어서의 잘못이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비고난’은 ‘비고란’으로, ‘다음란’은 ‘다음 난’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sup>127)</sup>. 외국어 표기의 경우는 컴퓨터 화일을 파일로 표기하는 경우가 올바르다고 하겠다<sup>128)</sup>.

## 2) 띄어쓰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문에 있어서 띄어쓰기는 맞춤법과 마찬가지로 한글맞춤법을 표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제체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는 몇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어학적 관점에 있어서의 매우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령명의 붙여쓰기에 관한 문제이다.

법령입안심사기준 제7장 제1절 I. 2. (2) (가)<sup>129)</sup>에 의하면 ‘법령의 제명은 붙여쓴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에 대하여는 법령문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령명에 대한 띄어쓰기의 예외는 법령입안에 대한 관행적인 요구이며,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다만 법령명의 붙여쓰기가 법령명의 일체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일면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하겠지만 법령명의 붙여쓰기가 일본어식 법령명 붙여쓰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우리의 관행으로 정착하였다는 견해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법령명의 붙여쓰기는 그것이 비록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글맞

127) 김문오,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 국립국어연구원, 2002, 개관 2면 참조.

128) 현행 법령에 있어서 화일을 ‘화일’로 오기하고 있는 법령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등의 법률을 포함하여 14건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파일’로 쓰고 있는 법령은 특허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법률을 포함하여 9건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 ‘파일’로의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29)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63면.

출법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령명의 일체성을 담보할 다른 수단을 강구한다면 쉽게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명 띄어쓰기의 한 방안으로서 법령명을 사용함에 있어서 띄어쓰기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반드시 법령명의 사용에 따옴표(“ ”)나 낫표(『 』)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130)131)</sup>.

이외에도 법문에 나타나는 띄어쓰기의 예외로서 문제되는 것은 법, 조, 항, 목 사이를 붙여쓰는 것과 법령의 한 조항이 가지 번호로 나갈 경우에 붙여쓰는 것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존명사인 ‘중’, ‘내’, ‘외’, ‘안’, ‘후’, ‘등’ 따위를 앞말에 붙여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명사인 ‘이외’를 앞말에 붙여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존명사와 독립명사의 띄어쓰기는 한글사용상의 보편성에 기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합명사의 사용에 있어서 띄어쓰기는 용어의 일체성을 확보한다는 점과 전문용어의 정착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법령용어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붙여쓰는 용어를 띄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 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잡게는 바로잡게로, 첨부 하여야는 첨부하여야로 붙여쓰미 올바르다고 하겠다.

## (2) 문장부호 사용상의 문제점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있어서 문장부호의 사용은 마침표와 쉼표의 사용으로 구분된다. 한글맞춤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는 호에 있어서는 문장 끝에 온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어연결의 경우는 가운데점(·), 어구를 연결할 때는 반점(,), 종류를 열거할 때는 쌍점(:)을 사용하고 있다. 따옴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작은따옴표와 큰따옴표 사용의 구분없이 큰따옴표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sup>132)</sup>.

130) 김문오,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 개관 3면 참조.

131) 법령명의 붙여쓰기의 극단적인 경우가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5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의개정을위한교환각서”로서 총89자이다.

132)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89, 168-171면 참조.

이에 대하여 문장이 아닌 단어에 있어서의 큰따옴표의 사용은 한글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호에서의 마침표의 누락과 ‘○, ○ 기타’ 혹은 ‘○·○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기타’의 앞의 쉼표와 가운데점의 누락도 잘못된 사용법임을 지적하고 있다<sup>133)</sup>. 특히, 불필요한 가운데점의 사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의미의 왜곡과 용어이해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폭행·협박·상해·살인죄,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영장 등과 같이 다수의 항목을 열거하면서 마지막 항목에만 동일반복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 3. 문법에 맞지 않는 사례

법문의 사용에 있어서 용어의 올바른 사용도 중요하지만 문법에 맞는 올바른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장성분간의 호응관계와 조사 및 어미의 사용도 그 기능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보다 짜임새 있는 문장일 것이다. 이에 국어학적 관점에 있어서 법문의 문법적 오류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조사사용의 예

조사는 주격과 목적격 조사 및 보조사가 있는 바, 법령에 있어서 이의 사용에 오류가 발견된다. 조사의 오류 중에는 조사를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와 조사를 무리하게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주격조사인 ‘이/가’를 사용할 자리에 관형격 조사인 ‘의’를 사용한 경우<sup>134)</sup>와 목적격 조사 ‘을/를’을 쓸 자리에 부사격 조사 ‘에’를 쓴 경우<sup>135)</sup> 및 보조사 ‘은/는’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sup>136)</sup> 등이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조사가 사용되어야 할 곳에 이를 누락<sup>137)</sup>함으로써 문법적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133) 김문오,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 개관 6-7면 참조.

134)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민법 제811조)→‘여자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135) 형법에 있어서 ‘~의 규정에 위반한 자’→‘~의 규정을 위반한 자’.

136)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_ 지방경찰청 검사장은~’(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개정안 제75조)→‘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경찰청 검사장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사사용에 관한 문제는 법령에서 주로 용어의 설명방식으로 쓰여지는 ‘~(이)라 함’을 ‘~은’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법령에 쓰이는 ‘에 불구하고’는 ‘에도 불구하고’로 쓰는 것이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이라 하겠다.

### (2) 어미사용의 예

법령문에 있어서 어미의 사용은 ‘~때’ 혹은 ‘~ 경우’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바, 이에 대한 오류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관형사형 어미 ‘~는’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며, 관형사형 어미 ‘~(으)르’은 확정된 현상이 아닌 경우(추측·예정·의지·가능성 등)에 상당히 개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미이다. 법문에 있어서는 ‘~었을 때’를 써야 할 자리에 ‘~은 때’를 쓰고 있는 경우와 ‘~을 때’를 써야 할 자리에 ‘~는 때’를 쓴 경우가 있으며, ‘~일 때’를 쓸 자리에 ‘~인 때’를 쓴 경우도 있다.

이상과 같은 어미의 오류는 문법상의 이해와 독해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호응관계의 예

일반적으로 문장의 사용에 있어서 문장성분을 생략할 때에는 그 성분을 누구든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문맥이어야 하며, 생략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뜻이 불분명해지는 문장에서는 문장성분을 생략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법문에 있어서 문장성분을 누락함으로써 법문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장성분의 누락의 예는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등의 문장상의 누락의 경우로 나타나며, 착오로 인하여 성분이 누락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 2·3호에 있어서 ‘2. 국·

137)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민법 제559조 제2항)→‘상대의 부담인 있는 증여에 대하여\_~’.

공·사채의 매입’, ‘3. 법률구조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의 매입’이라는 규정은 기금운용을 위한 매입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공단의 기금임을 명시함이 이해의 편의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2. 기금으로 국·공·사채의 매입’, ‘3. 기금으로 법률구조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의 매입’으로 분명히 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은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엇을 점유하는가에 대한 목적어의 누락을 볼수 있다.→“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은 및 공연하게 물건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보다 문장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기타 호응관계의 원활한 이해를 위하여 문장에 있어서 누락되는 성분은 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문장의 이해를 과도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표시하여 법문의 이해를 쉽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4) 접속구성의 예

일반적으로 문장에 있어서 성분들을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요소로서 접속조사 ‘와/과’, 접속어미 ‘-거나’, 접속부사 ‘및’, ‘또는’<sup>138)</sup> 등이 있다. 이러한 접속어들이 이어주는 앞의 성분과 뒤의 성분은 문장성분으로서의 지위가 대등하여야 하며, ‘구(句)+절(節)’의 접속형태나 ‘절+구’의 접속형태는 접속단위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아 대등구조의 형평성이 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문에 있어서 발견되는 대등구조의 오류는 종종 발견되어 진다.

138)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의하면 ‘또는’과 ‘및’의 사용법에 관하여 『‘또는’과 ‘및’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르지만 실제 입법에 있어서는 어느 쪽을 사용할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을 나열할 때 사용하는 선택적 접속사이다. 3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또는’을 쓰고 그 앞에서는 가운데맺점(·) 또는 반점(,)으로 연결한다』고 하며, 『‘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병합적 접속사이다. 3개 이상의 사항을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및’을 쓰고 그 앞에서는 가운데맺점(·) 또는 반점(,)으로 연결한다』고 하고 있다(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96, 171-172면 참조).

예를 들면,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은 및 공연하게<sup>139)</sup>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의 내용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물건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함이 보다 이해의 편의와 법문의 문법적 내용에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는 ‘선의, 평은 및 공연하게’라는 표현에서 ‘및’으로 이어지는 성분들간의 문법적 지위가 달라서 문제가 된다. ‘선의·평은’은 어근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공연하게’는 어근과 접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어지는 세 성분들의 문법적 지위가 대등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보다 옳바르다고 하겠다.

또한 법문에 많이 사용되는 처벌규정 중에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의 문장구조는 “살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으로 해석되어지며, 이는 살해와 사망이라는 행위의 태양을 법문에서 구분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sup>140)</sup>.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은 ‘돌, 석회, 벽돌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진 견고한 벽돌~’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라는 표현은 ‘또는’이 열거하는 대상들의 의미적 형평성이 깨어져서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sup>141)</sup>.

#### (5) 지시어의 예

지시어는 일반적으로 종속복합문에서 주절에 있으면서 종속절의 성격을 지시해 주는 단어 또는 단어결합을 의미하는 바, 법문에 있어서 지시

139) 공연(公然)하게 :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뽕뽕하게.=공공연하게.(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상), 두산동아, 2000, 531면). ‘공연하게’는 ‘뽕뽕하게’가 나온 표현이라는 주장(김문오, 법조문의 문장실태조사, 국립국어연구원, 2001, 202면)이 있으나 ‘공공연하게’가 표현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공연(公演)이라는 명사형과 ‘공연(空然하게)와의 의미구분을 위해서 고려해 볼만하다고 하겠다(법제처,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 2002, 17면 참조).

140) 김문오,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 개관 25면 참조.

141) 김문오, 법조문의 문장실태조사, 205면 참조.

어는 앞문의 내용을 지시어의 형태로 줄이거나 동일성을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지시어의 오류는 법문에 있어서는 ‘이름’의 사용을 남발하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잘못된 사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름’의 경우는 법문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법문내에 중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②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에 대하여 (이름) 준용한다’(도로교통법 제56조의 2 제2항),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 (이름) 준용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5항) 등이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법문에 올바르게 사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올바른 경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조 제1항)는 규정에 있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가 ‘의무·당위’의 이므로 이러한 상황은 동작성은 없고 상태성만 있으므로 대응언도 동사 대응언인 ‘그러하다/그러지 아니한다’를 쓰지 않고 형용사 대응언인 ‘그러하다/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쓰는 것이 옳바르다. 즉, 용언이 의무·당위·필연·금지 또는 불가능을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다/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형용사 대응언의 사용이 옳바른 것이다. 하지만,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폐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또는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있어서는 ‘예고등기를 한다’는 동사이고 ‘그러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한다’가 옳바른 표현이라고 하겠다<sup>142)</sup>. 또한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19

142) 상기의 법문은 ‘예고등기는 A 경우에 한다. 그러나 B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표현하고 있으나, ‘예고등기는 A 경우에 한다. 그러나 B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그러지 아니한다’는 것이 문법상 옳바른 것이라 하겠다.

조)에 있어서는 ‘대리한다’는 동사이며, ‘그리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지 아니한다’가 문맥상 올바른 것이며, 표현상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다’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고 하겠다<sup>143)</sup>.

#### (6) 능동·피동형태의 예

능동태는 일반적으로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작용을 스스로 할 때 서술어가 취하는 형식을 가리키고, 피동태(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어 그 동작이나 작용을 받을 때 서술어가 취하는 형식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피동문에서는 대응되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가 여격의 부사어가 되는 문장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다. 능동태에서는 동작의 주체가 부각되며, 피동태에서는 동작의 대상이 부각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법문에 있어서는 피동형태의 동사를 써야 할 곳에 능동형태의 동사를 쓴 경우가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44)</sup>.

예를 들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는 규정에 있어서 ‘완성한다’는 ‘완성된다’라는 표현이 올바르다고 하겠다. 즉, ‘완성한다’는 능동형 타동사로서 부적합하며, 이를 피동형 자동사인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법상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겠다<sup>145)</sup>. 비슷한 경우로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민법 제998조)에서 ‘개시한다’는 ‘개시된다’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겠다. 또한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1073조 제2항)에 있어서 ‘성취한 때’나 ‘조건성취한 때’는 ‘성취되었을 때’와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라고 표현함이 올바르다고 하겠다<sup>146)</sup>.

143) 김문오, 법조문의 문장실태조사, 218면 이하;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 개관 29면 이하 참조.

144) 김문오, 법조문의 문장실태조사, 229면 참조.

145) 이에 더하여 의미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완성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완료된다’라는 표현이 보다 더 적절하다고 보여진다(김문오, 법조문의 문장실태조사, 230면).

146) ‘성취한 때’라는 표현에서 ‘성취하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 데, 위 조문에는 목적어가 없으며 타동사가 쓰일 문맥이 아니므로 ‘성취하다’는 자동사인 ‘성취되다’로 바꾸어야 한다(김문오, 법조문의 문장실태조사, 232면).

#### 4. 의미적으로 부적절한 사례

법문에 있어서 법령용어순화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법령의 수령자인 일반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sup>147)</sup>. 그러나 현행 법령의 내용은 여전히 용어는 물론 문장에 있어서도 매우 어렵게 인식되고 있다고 하겠다. 법령용어와 문장에 관한 이해의 용이성과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87.1%와 85%로 조사되었으며, ‘쉽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4.8%와 4.6%에 불과하였다. 법령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주된 이유는 ‘생소한 전문용어를 사용해서’(70.4%) 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해서’(22.0%)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률문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위적이고 딱딱한 어투 때문’(49.3%)이 절반 가까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내용이 모호하여 불명확하므로’(19.4%)와 ‘외국어 번역투의 표현이 많아서’(17%)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sup>148)</sup>. 이러한 조사는 그 동안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노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아래에서는 법령에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에 대한 순화의 방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가료(하다)’라는 용어는 ‘치료(하다)’라는 의미로 이미 1989년 법령용어순화정비자료집에서 순화대상용어로 지정하였으나 여전히 34건의 법령<sup>149)</sup>(총 조문수 61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개수(하다)’라는 용어는 ‘고치다’라는 의미로 여전히 36건의 법령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법령용어에 대하여 여전히 법령에서 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화대상용어를 정리하여 2002년 법제처에서는 필수정비대상용어 2,068건을 선정하여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을 발

147) 일상생활공용용어는 중등교육을 받는 정도의 사람이면 누구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는 가능한 한 쉬운 용어로 바꾸어쓴다(법령용어순화정비기준 제2호).

148) 박영도 외,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01. 6., 15-18면 참조.

149) 사용법령의 예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산보안법시행령,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등 총 34개의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다.

간한 바 있다.

그러나 어려운 법령용어에 관하여는 국어학자들과 법학자들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국어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수한 한글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법령을 보다 쉽게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지만<sup>150)</sup>, 법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학이라는 학문적 입장의 전문용어의 사용범위를 최대한 구축하고자 한다<sup>151)</sup>는 점에서의 의견대립이라고 하겠다. 이는 보다 쉬운 용어의 사용에 대한 합의점은 도달되어 있으나 그 범위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많은 시각의 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법령용어와 문장의 평이화에 관하여는 학제간의 보다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작업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를 제공한다고 하겠다<sup>152)</sup>.

150) 대표적인 경우가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에 참여한 바 있는 박갑수 교수의 개정안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박갑수, 민사소송법의 순화연구, 대법원보고서 참조).

151) 이상돈, 형사법분야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형사입법과 언어-,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자료집), 2002. 5., 35면 이하 참조.

152) 민사소송법 제정작업과 관련된 자료로는 한국법제연구원, 개정민사소송법의 법령용어 및 법률문장의 순화와 향후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2003. 4.; 호문혁, 민사소송법분야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2002. 5., 135면 이하 참조.

## 제 5 장 정보통신 관련용어의 수용과 과제

## I. 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입법정책과 이론을 통한 규범과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에 나타난 사회체제의 변화를 법적·제도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과정에 있어서 그 주요 내용을 담아낼 법령용어의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즉, 새로운 법령의 제정과 기존 법령의 개정작업에 있어서 새롭게 대두되는 현상을 언어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용어가 기존의 언어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용어라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의 언어체계에 있어서 새로운 용어는 거의 외국어 내지는 외래어라는 점에서 이의 수용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용어의 법령에의 수용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통신관련 법령에 있어서 용어의 계수 내지는 수용에 있어서는 정보관련법의 법이론적 특성에 기한 합리주의와 목적주의의 법언어적 개념의 수용을 통하여 확인되어진다고 하겠다<sup>153)</sup>. 이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새로운 용어 대부분이 영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이며, 기존의 한글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언어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법령에 수용하는 과정은 외국어를 그대로 차용함으로써 해서 외래어로 수용하는 방법이 그 한 가지라고 하겠다(직접차용)<sup>154)</sup>. 이것은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외국어 내지는 외래어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적 개념을 법령에 수용하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무분별한 외국어의 남용으로 인하여 우리의 언어체계를

153) 법언어와 법정보학에 관한 문헌은 Fritjof Haft, *Rechtssprache und Rechtsinformatik*, 법과 언어(한국법제연구원·한국법철학회·고려대 법학연구원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1. 9. 21., 71면 이하 참조.

154) 직접차용의 내용에 관하여는 임중호, *전계논문*, 38-41면 참조.



말살할 위험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하여야 할 점이라고 하겠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용어가 컴퓨터·디지털·콘텐츠 등으로 현재 우리의 법령용어로서 수용된 용어라고 하겠다.

둘째, 새로운 용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번역하여 수용하는 문제라고 하겠다(간접차용; 번역차용)<sup>155</sup>. 새로운 외국어의 유입에 관하여 기존의 우리말에 적절한 단어나 용어가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말로 대체하여 사용함은 당연한 것이며, 이제까지의 우리의 대부분의 법령용어 역시 우리말로 적절한 번역을 통하여 체화시켜 왔다는 점에서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말의 언어적 한계와 번역상의 오류로 인하여 개념의 왜곡이나 오류를 시정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단점이 존재하며, 번역상의 어려움을 일본식 한자어 번역용어의 무분별한 차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학제간의 연구교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말의 새로운 어원을 찾아서 새로운 우리말을 창조하는 방법이 있다(차용창조)<sup>156</sup>. 이러한 방법은 새로운 용어에 대한 개념적 오류와 왜곡을 극복하고 우리말의 언어적 활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새로운 우리말의 창조에 있어서 언어의 사회적 타당성과 보편성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사회성을 생취하지 못할 경우, 법령용어와 일반용어간의 사회적 괴리가 존재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법령용어의 수용에 있어서는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단을 학문적 연구와 실무적 경험은 물론 일반인의 언어사용의 습관 등을 비교·검토하여 적절하게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up>157</sup>. 그러나 직접차용이나 번역차용의 경우에 있어서 무분별한 외국어의 직접차용이나 일본어식 번역차용의 문제는 최대한

155) 간접차용의 방법에 관하여는 임중호, 전계논문, 41-45면 참조.

156) 차용창조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는 임중호, 전계논문, 52-56면 참조.

157) 사이버 관련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는 현재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사이버 법령에서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인터넷법학회공동워크샵, 2003. 5. 23., 참조.

자제되어야 할 것이며, 차용창조나 차용의역 등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습관과 내용에 가장 적절한 방법과 내용으로 순화하고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법령용어의 새로운 수용과 사용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과 현행 법령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정보혁명과 전자공간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

### 1.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접근방법

인터넷을 그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인류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창출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가상공간(Cyberspace)<sup>158)</sup>의 무한창출과 확대를 통하여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글로벌 차원의 지식정보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즉, 그 동안 인류가 축적해온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컴퓨터 운영체계의 기본단위인 bit에 의하여 디지털화하면서 데이터베이스로 재구축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 역시 교류와 축적을 반복하면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지식정보를 에너지로 하는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실시간의 새로운 생활공간을 창출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새로운 생활공간의 등장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제도와 법적 규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현실공간과의 조화를 통하여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것인가가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최대의 화두로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의 기본구조는 웹사이트라는 오프라인에 의한 생성과 창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

158) 'Cyberspace'라는 용어는 William Gibson의 소설 'Neuromancer'(1984년)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말로 번역에 있어서는 '가상공간'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전자공간' 혹은 '통합공간'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최승원, 공법상의 사이버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이버 법령에서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한국법제연구원-한국인터넷법학회 공동위크샵 자료집), 2003. 5. 23., 10면 참조). 최근에는 원거리 통제가 가능한 'Cybernetic'이라는 새로운 공간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로렌스 레식, 김정오 역, 코드-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나남출판, 2002, 35면).

서 이제까지의 사이버 공간의 활용은 그 기본적 전제를 현실생활에 관한 하나의 보조적·수단적 기능만을 인정하고 사이버 공간내부의 주체적 활동관계는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대중화와 새로운 사이버상의 사회적 조직의 탄생은 사이버 공간만의 주체적 활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는 그 주체성에 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사이버 공간의 비약적인 발전과정을 예상할 때, 그것의 시간적 간격은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의 기본구조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0과 1의 컴퓨터 언어의 상호반응구조에 기한 양자적 관계론의 측면에 바탕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컴퓨터의 무한확장적 상호반응구조의 기본적인 인식은 이진법에 기초한 양자관계의 끊임없는 반응과 관계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계론적 반응구조는 기존의 현실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적 구조와 언어적 구조에 있어서의 주체중심의 사고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고립된 개인 혹은 단체로서의 유기체적 성질에 그 철학적 바탕을 둔 독립개체의 도구화 개념이 요구해 온 기존의 사고논리를 양자중심의 관계론적 입장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자 중심의 관계론적 입장의 철학적 변화는 기존의 ‘주체중심의 철학’에 대하여 ‘객체지향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초기단계의 운영체제 중심의 발전이 컴퓨터의 운영체제의 확립에 따라 소프트웨어에의 적응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객체지향적 발전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sup>159)</sup>. 즉, 현실공간의 운영체제와는 전혀 다른 일종의 가상공간

---

159) 윈도우와 매킨토시로 대별되는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하여 운영체제의 독점화에 반대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적응하는 리눅스 등의 탄생은 운영체제에 소프트 웨어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의 운영체제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그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운영체제’라는 주체가 ‘소프트 웨어’라는 객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 스스로 주체라는 ‘운영체제’에 적용함으로써, 주체중심의 체계가 아닌 객체지향적인 체계를 수립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임을 감안할 때 공학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으로서 이를 ‘아바타’(Avatar) 공간으로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sup>160)</sup>, 이러한 가상공간으로서의 아바타 공간은 ‘머드’(MUD)나 ‘무’(MOO) 공간에서 생겨났다<sup>161)</sup>. ‘머드’와 ‘무’ 역시 가상세계이지만 그것들은 문자에 기초한 가상세계이며, 현실세계와의 문자적 교류에 의하여 아바타라는 캐릭터로서 소통하게 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2.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내지 공간민주주의<sup>162)</sup>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의 사회의 구성관계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에 중심을 둔 직선적 민주주의의 평면적 구현이 아닌 사이버라는 가상현실의 공간적 개념에 기한 직접민주주의 관념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의 상호관련성은 ‘계약’이라는 자기결정에 의한 편입에 기초한 관계라고 하겠다. 즉, 기존의 국가론에 있어서의 자연상태에 기한 사회계약의 관계가 새로운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구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의 가상현실 속의 사회는 그 실제적 관계에 있어서 계약이라는 행위를 주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주체적·이성적 인간상을 그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주체적 인간의 활동에 기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편입은 사이버 공간의 활동에 있어서 자기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며,

160) 로렌스 레식/김정오 역, 코드-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나남출판사, 2002, 45면.

161) ‘MUD’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래 Multi-User Dungeon 또는 Multi-User Domain을 의미한다. ‘무’는 일종의 ‘객체 지향적인 머드’이다. ‘머드’나 ‘무’의 삶을 분석한 고전으로서는 Sherry Turkle, Life on the Screen :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New York : Simon & Schuster, 1995) 참조. 또한 Elizabeth Reid, “Hierarchy and Power : Social Control in Cyberspace,” Communities in Cyberspace, edited by Marc A. Smith and Peter Kollock(New York : Routledge, 1999), 107 참조. 람다무(LamdaMOO)라고 불리는 머드의 아버지 또는 신은 파벨 커티스(Pavel Curtis)이다(“Mudding : Social Phenomena in Text-Based Virtual Realities,” in Stefik, Internet Dreams, 65-92).

162) 전자민주주의 내지 공간적 민주주의는 현재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자적 민주주의 즉, 현실적 편입과 활용을 위하여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과는 그 개념적 구조를 달리한다고 하겠다. 즉, 사이버 공간의 전자적 수단을 현실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편입에 활용하는 전자적 민주주의가 아닌 사이버 공간 내부의 자체적 공간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내지는 권력구조를 파악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활동의 절대적 자유와 자율에 기한 절대적 책임의 관계를 요구한다고 하겠다. 이를 기초로 형성된 사이버 공간상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관계의 구조를 ‘전자민주주의’ 혹은 ‘공간민주주의’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현실사회나 국가에서 나타나는 지배와 통치의 권력관계를 자율과 관리의 관계로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즉, 기존의 국가권력이나 사회적 권력의 통치중심적 관계를 관리중심의 관계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주권적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참여자의 직접성이 강조되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를 띄게 된다고 하겠다.

실질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제작자나 관리자의 권한행사는 직접적으로 그 사이버 사회구성원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관리하며, 가상사회활동을 저해하는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와 규제를 그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 가상사회에의 편입과 탈퇴 역시 공간상의 규칙과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저지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그 활동을 임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상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체에 의한 활동은 객체인 사이버 공간에 주체가 적응하고 그 활동의 내용 역시 객체인 사이버 공간이 요구하는 적응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권력관계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 3. 정보화관련입법 및 법령용어

#### (1) 글로벌 규범화 논의의 고려

가상공간을 규율하는 입법을 하기 위한 글로벌화 논의의 거시적 흐름과 세부동향의 통찰이 필요하다<sup>163)</sup>. 지난 수년간 제1세대 인터넷은 규제보다는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시장과 산업주도형 모델로써 발전해 왔지만, 가상공간은 유해사이트의 폐해, 불법복제 및 P2P에 의한 저작권 침

163) 최승원, 전계논문, 16면 이하 참조.

해, 데이터베이스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적 규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무관여 입장은 선별적 관여 또는 산업계와의 공동규제의 형식으로 변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정부(G)는 국가안전, 세금, 공공서비스 등을 이유로 개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고, 기업(B)은 불법복제방지 등을 통한 이윤확보와 영업비밀이나 기업운영 등에 관한 정보보호의 요청도 증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소비자(C)에게 있어서도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분쟁해결 등의 제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규제논의의 배경은 비단 우리나라에 한정된 논의가 아닌 범세계적인 논쟁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로서 차세대 인터넷의 상용화에 따른 정보화 산업의 기술적 고도화와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해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차세대 인터넷 세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법적·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산업체간의 이해상충, 정부들간의 합의곤란, 각 국제기구의 산별적 접근방식 뿐만 아니라 기존의 복잡한 세계정세와 국제문제 등으로 인하여 각 정부간 혹은 각 주체간의 입장수렴이 쉽지 않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사이버 법령용어의 수용에 있어서도 우리 현실에 맞는 올바른 정착의 방향과 아울러 세계적인 용어의 통일성에 관하여도 관심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산업경쟁력의 고려

우리나라의 통신 및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상공간에 있어서 구현되는 복합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창출과 경쟁력의 확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한 IT관련 법적 규율은 지식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핵심적 요소이며, 법적·제도적 통일성의 확보를 위하여는 법령에 있어서의 용어와 의미의 정비와 순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아직은 관련법령의 제정과 개정에서 용어의 통일성에 관한 논의가 미미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시키면서

새로운 용어의 창출과 기존 용어의 사용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일관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의 정비에 있어서도 단순한 용어의 통일이나 한글화에 치중하기보다는 외래어 사용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폭넓게 수용하고 이를 통하여 개념의 보편성과 사회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새로운 용어의 수용에 대한 보수적 관점으로 인해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한자어나 한글의 무분별한 도입은 법령용어와 일반용어간의 개념의 괴리를 초래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 (3) 정보공유와 다양성 고려

가상공간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네트워크를 물적 기반으로 정부·기업·소비자간의 다양한 지식정보활동을 통하여 형성된다. 이 점에 있어서 특히 소프트웨어는 인류의 지적 산물로서 지식정보에너지를 생명력으로 하여 다원적·복합적인 생태적 생활공간으로 진화해가는 가상공간 형성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복합성·무형성·무소모성·추상성·기술혁신성·산업시장의존성 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의 공유를 통한 e-welfare라는 측면에서는 공공성 및 전지구적 차원의 공유재산적 가치를 갖는다<sup>164)</sup>.

이러한 정보공유와 다양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새로운 법령용어의 창출을 위한 노력은 전문성과 보편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하며, 가상공간내에서의 확고한 지위를 자리잡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법령의 제정만이 아닌 새로운 용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4) T-Code와 L-Code의 고려

가상공간을 규율하는 입법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날로그 법질서와 디지털 법질서의 근본적 전제조건을 차이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종래의 실물경제에서 재화소유와 배분원리가 자원의 희소성

---

164) 최승원, 전제논문, 18면.

과 유한성을 전제로 하였다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실상 무비용·무한 복제가 가능한 기술기반의 무형적 지식정보를 매개로 하기 때문이다. 기술표준의 규범화,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종래의 법적 규율의 한계를 드러내는 새로운 문제상황, 그 해법을 위한 발상의 대전환은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겠다<sup>165)</sup>.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존의 입법과정에 나타난 국내적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보편화되어야 하며, 법령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국제적 용어에 맞는 용어의 새로운 정착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입법에 있어서 기술발전과 기술표준의 글로벌화 경향을 고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령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미래지향적이며, 보다 보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염두에 둔 용어의 창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Ⅲ. 정보화관련 법령용어의 수용과 과제

#### 1. 서

IT관련 입법의 미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중첩, on/off-line의 통합, 유형과 무형의 혼합, 동시와 이시(異時)의 접합, 국내와 국외의 혼재, T-Code와 L-Code의 충돌과 타협 등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미궁을 어떻게 헤쳐가느냐라는 지극히 풀기 어려운 숙제를 안은 채, 종래의 법질서나 법체계의 완강한 불잡음(기존법)과 때로는 소극적인 때로는 무모하기도 한 변신(수정법)을 넘어서며 새로운 법질서의 지평을 열어가는 모습이 될 것이다<sup>166)</sup>. 그러나 실정법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법령제정시의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의 결여, 관련법령간의 충돌과 불일치 내지는 애매모호함 및 불확정 개념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가상공간과 관련되는 현행 법령들을 보면,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격차해소에관한

165) 최승원, 전계논문, 19면.

166) 최승원, 전계논문, 20-21면 참조.



법률 등과 같이 ‘정보’ 내지 ‘정보통신’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정보(통신)관련법령과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등과 같이 ‘전자(인터넷)’관련법령 등이 있으며, 출판 및인쇄진흥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과 같이 정보(통신)이나 ‘전자’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관련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67)</sup>. 이는 아직도 우리의 법령체계에 있어서 기술적 요소와 인문학적 요소의 결합이 이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학문간의 공통적 합의는 물론 실무적·기술적 요소와의 관련성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법령 제·개정에서 학문적·실무적 주체간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합일점의 도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본 글의 주제와 관련된 법령용어의 문제에 있어서도 불확정 개념의 오·남용의 사례는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가상공간의 규율을 목적으로 제·개정되는 법령에 있어서 나타나는 법령용어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법령용어의 개념정립에 관한 방안

### (1) 개념의 명확화와 통일화에 대한 논의

#### 1) 정보(통신)과 ‘전자’개념의 명확화

먼저 현행 법령에 있어서 가상공간관련 기본개념의 하나인 정보(통신)과 전자의 개념에 대한 실정법상의 혼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현행법령에 있어서 정보 혹은 정보통신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독립적 개념으로서 자리잡고 있으나 ‘전자’의 개념은 하나의 종속적 개념으로서 ‘전자정부’, ‘전자문서’, ‘전자거래’ 등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167) 가장 단적인 예로서 정부의 행정전산화와 정보화 관련 법률인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 나타나듯이 행정부에서 시행하는 가상공간관련 기본법률에 있어서도 그 개념의 통일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형적인 자산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자체로서 하나의 주체 혹은 객체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라는 개념은 하나의 수단적 요소로서만 인정되어지는 종속적 변수로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정부의 전자화, 문서의 전자화, 거래의 전자화를 의미하는 하나의 기술적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장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자료와 또는 지식을 말한다」(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개념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전자정부’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를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라고 규정하거나,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sup>168)</sup>」(동법 동조 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는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와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라고 하여 ‘전자’의 개념에 대하여는 명확한 개념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행 법령상의 개념규정을 볼 때, ‘정보’와 ‘전자’의 개념은 별개의 개념으로 치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보’가 독립적·추상적 개념이며, ‘전자’는 종속적·구체적 개념으로 정립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사용은 의미구분의 불명확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소관부처의 입법과정상의 개념으로 자리잡은 느낌마저 풍기고 있다<sup>169)</sup>. 그러나

168)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 개념은 ‘전자’ 혹은 ‘전자정보’라는 개념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 점에 있어서 양 개념의 사용에 있어서의 통일화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엄격히 기술상에 있어서 양 개념이 분리를 요하는 것이라면 그 개념들을 보다 명확하게 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sup>170)</sup>.

## 2) ‘전자문서’ 개념의 통일화

‘전자문서’의 개념정의는 가상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텍스트의 내용을 정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개념은 매우 좁게 규정하거나 법령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통일성이 제기되고 있다<sup>171)</sup>.

일반적으로 ‘전자문서’의 개념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sup>172)</sup>. 그러나 법령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개념은 여전히 정보의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정보화촉진법상의 정보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제5호),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제2조 제3호)<sup>173)</sup>, 화물유통촉진법(제2조 제11호)<sup>174)</sup>, 무역업무자동화

169) ‘정보(통신)’은 정보통신부 소관입법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자’는 기타 다른 부처의 소관입법에 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보인다(최승원, 전제논문, 24면).

170) 이에 대하여 전자(電子: 음전하를 가지고 원자핵의 주위를 도는 소립자의 하나)와 전자(電磁: 전자기. 전기와 자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의 용어상의 구분은 보다 명확히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171) 현행 법령에 있어서 ‘전자문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법령의 수는 115건, 332개 조문이다. 그 중 ‘전자문서’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전자거래기본법을 비롯한 7개이다.

172) 정완용, 사법상의 사이버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이버 법령에서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한국법제연구원-한국인터넷법학회 공동 워크샵 자료집), 2003. 5. 23., 37면 참조.

173)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상호간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되거나 출력된 문서 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174) ‘전자문서’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전산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처리·보관 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sup>175)</sup>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개념의 통일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문서의 형식이 표준화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 이는 법령에 따라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문서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전자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의 공식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전자문서의 표준화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sup>176)</sup>.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이고 폭넓은 개념으로써 전자문서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2) 기타 법령용어의 개념정립에 관한 논의

### 1) 전자서명

일반적으로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나 기타 전자적 정보에 있어서 문서나 정보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붙이는 표식을 말한다. 이러한 전자서명에 대한 법령의 용어정의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전자거래는 물론 모든 가상공간활동에 있어서 문서나 정보의 내용적 타당성과 증명성을 담보하는 요소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서명과 관련된 기본법으로서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었다<sup>177)</sup>. 그러나 전자서명법의 제정이전에도 다수의 법률에 전자서명에 관한 규정<sup>178)</sup>이 산재하고 있는 바, 이의 개념을 정립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이전

는 전송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17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되거나 출력된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자료를 말한다.

176) 정완용, 전계논문, 38면; 노태약, 전자문서의 개념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범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및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3. 5., 24면.

177)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92호로 제정되고,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85호로 개정되었다. 개정 전자서명법의 내용에 대하여는 정완용·배대현, 개정 전자서명법 해설서, 정보통신부, 2002. 참조.

178)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화물유통촉진법,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이 있다.

의 규정들은 디지털서명방법에 한정되지 않고 스캐닝 등에 의한 서명이 미지도 포함하는 일반적인 전자서명에 관한 규정이며, 대부분 폐쇄적인 EDI통신망에서 개별법으로 예정하는 특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정의된 규정들이라고 하겠다<sup>179)</sup>.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는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 전자서명과 구별하여 동조 제3호는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sup>180)</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법률에 있어서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개방형 인터넷 환경에서 처리되는 전자문서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거래의 활성화, 전자정부의 구현, 전자화폐의 이용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디지털서명방법에 의한 전자서명법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개념과 내용은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법인 전자서명법의 개념과 내용을 다른 법령이 수용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sup>181)</sup>.

## 2) 전자무역

전자무역과 관련된 내용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2000년 12월 29일 그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법적인 무역의 한 형태로 법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동법 제2조 제6호는 『전자무역』이라 함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

---

179) 일반적으로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은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별할 수 있다. 광의로는 모든 전자적 형태의 전자서명을 포함하여 수기서명을 스캐닝한 이미지, 키보드를 이용한 서명, 접근제어를 위한 비밀번호 등의 기술, 전자서명에 사용할 수 있는 생체측정학적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의한 전자서명이 포함된다. 협의의 전자서명은 공개키 암호화기법(비대칭암호화 기술 : Asymmetric Cryptosystem)에 의한 디지털 서명을 말한다(정완용, 전계논문, 51면).

180) 공인전자서명에 한하여 법령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전자서명법 제3조).

181) 정완용, 전계논문, 44면.

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고(동법 제18조), 물품 등의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동법 제9조의 5)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정보통신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역거래를 종래 ‘사이버무역’ 혹은 ‘e-트레이드’ 등과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던 것을 ‘전자무역’이라는 법령상의 용어로 명확히 한 것이라 하겠다<sup>182)</sup>. 전자무역은 전통무역의 거래방식을 전자화하는 수준을 넘어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무역구조와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궁극적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무역이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국가간 거래인 무역행위의 본질적 업무를 인터넷을 포함한 IT수단을 활용하여 전자적·정보집약적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sup>183)</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외무역법상의 ‘전자무역’의 개념규정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라는 전자거래의 내용을 전자거래기본법이 사용하는 포괄적 용어인 ‘정보처리시스템’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는 종래의 법령에서 사용했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라는 개념을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시 포괄적이고 기술중립적인 개념인 ‘정보처리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어의 통일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3) 전자문서집합체(데이터베이스)

현재 전자·정보관련 내용의 주종을 이루는 자료나 파일의 집합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 : DB)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법령에 있어서도 이 용어의 수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혼란이 나타

182) 전자무역의 유사개념으로는 무역자동화(무역자동화법 제2조 제1항), 전자무역거래(무역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의 법령상의 용어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e-Trade, 사이버(인터넷)무역 등의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의 비전, 2002, 13면 참조).

183) 한국무역협회, 전거서, 9면.

나고 있다.

무역자동화촉진법 제5조 제2항 제3호는 무역자동화지정사업자의 업무의 하나로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집합체(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제작 및 보급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자료틀’<sup>184)</sup>이라는 용어로 풀어서 사용하고 있으나, 자료의 모임이라는 의미로서의 새로운 용어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외래어로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사전적 개념의 정착을 위하여 법령에서는 ‘자료틀’이라는 용어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자료틀’이라는 용어가 단순한 자료의 집합체라는 정적인 개념만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료의 집합체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 활용에 따른 다양한 범위의 정보관련자료이용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동적인 개념인 ‘데이터베이스’라는 외래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고 하겠다<sup>185)</sup>.

#### IV. 법령용어수용에 따른 방향과 과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가상공간의 형성과 비약적인 발전은 법·제도적 관점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통한 보완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으나, 제도적 보완과 법령의 정비에 대한 시급함이 법제도적 부조화와 불협화음을 조장한다면 이 또한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상공간의 규율을 위한 법제는 매우 종합적이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이버 관련 입법은 무엇보다도 미래의 기술발전을 예측

184) 국어정보학회, 우리말 전산용어 사전, 1995, 정음문화사, 188면.; 이와 관련하여 ‘자료집합체(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견해도 있다(정완용, 전개논문, 52면).

185)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데이터베이스’는 외래어 법령용어로 정착되었다고 하겠다. 현행 법령은 총 74건의 법령, 138개의 조문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미래의 기술발전을 법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소위 ‘기술중립주의’의 원칙을 형성하고, 특정기술에 한정되지 않는 중립적인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세계화와 선진국의 기술주도현상에 따른 무분별한 정보통신용어가 여과없이 우리의 법령용어로 수용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보통신관련용어의 수용에 있어서 가능한한 우리말로 번역용어수용에 노력하고, 이와 함께 가장 적절한 용어를 취사선택하여 통일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학계간, 실무간의 공동 연구와 참여가 이루어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 관련입법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표현에 있어서도 법령용어 사용의 일반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법령상호간의 통일적 사용 및 가능한 한글화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와 실무계 공통의 비판적 논쟁은 정부소관부처별 정보통신관련 법령용어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소관 부서에 따라서 관할 법령이 다른 실무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정보통신관련 법령용어가 통일되지 못하고 제각각 사용되는 법령체계와 법령용어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다<sup>186)</sup>.

또한 기존의 전통적 법체계인 공·사법의 구분에 의한 법체계의 정비는 정보통신과 가상공간관련 법령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기에 무리가 있으며, 상호 혼합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 통일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립적 체계에 따른 용어상의 혼란도 동시에 논의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령과 용어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반적으로 학계나 실무계에서 간과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인 사이버관련 신조어의 수용에 있어서 기존의 법제도적 법령용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매우 보수적인 용어체계의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새로운 기술 발달과 사상적 변화의 과정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186) 정완용, 전계논문, 35면 참조.



일환으로서 기존의 기술적·사상적 변화에 따른 언어적 변화를 기존질서의 파괴나 언어적 혼란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새로운 언어적 창출의 결과물로 봄으로써 이에 대한 능동적인 수용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보다 다양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사이버법령의 제정과 기존법령의 개정에 있어서의 법령용어에 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한 약관에 대한 내용과 법령용어 및 문장에 관한 연구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법적 규율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약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용어 및 문장의 이해는 일반 법령의 경우보다 오히려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따라야 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법령연구와 병행한 동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187)</sup>.

---

187) 약관에 관한 법령용어 및 문장에 관한 연구는 김성천, 약관상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자료집), 2002. 5. 17., 153면 이하 참조.

## 제6장 결론

### I. 법과 언어의 상관관계에 따른 용어정립의 방향성

이상에서 법령용어에 관하여 법언어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현행 법령에 있어서 학문적 연구와 실무적 연구는 이의 순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 성과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반국민의 법인식이라는 현실과의 괴리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학제간·실무간의 논의의 합일점과 통일성을 기함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하지만 최근의 민사소송법의 개정과정에 나타난 학제간·실무간의 긴밀한 교류와 오랜 연구는 법령입안과정에 있어서 용어와 문장순화의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기초로 하여 전분야의 법령 제·개정작업에 있어서 특정한 세력이나 학문분야의 독점이 아닌 사회적 제세력의 견해와 학제간의 공동연구활동을 통한 법령용어의 정비와 순화작업을 이룸으로 해서 보다 국민생활과 정서에 접근하는 민주적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sup>188)</sup>.

물론 법언어와 일상용어와의 괴리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법학이라는 전문분야에 있어서 언어적 전문성으로 인한 일상용어와의 괴리는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한자어와 일상생활용어와 동떨어진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법전문가만의 법령으로만 머무는 오류는 최소한으로 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우리 법령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일본어식 법령용어의 순화작업은 민족적 입장에 의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우리말에 대한 보다 높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자각한다는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학제간의 교류에 있어서 법학계와 국어학계의 상호교류와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는 그 동안 학제간의 고립된 연구로 인한

188) 일반인들의 법령이해를 위한 기본지침으로서 참고할 만한 것은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177-178면 참조.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지향하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연구자간의 교류가 활성화·정제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법령제·개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비법학분야의 전문연구자들을 동참시킴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보편적이며 통일적인 입법을 위한 활동에 보다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기술발달로 인한 새로운 법령용어에 대한 연구와 법령에의 수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여 할 것으로 보인다.

## II. 한국어와 법령용어의 정립에 관한 소고

한국어에 대한 기호론적 분석에 의하면 한국어는 서구사회의 근대법이 나 이성법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기호론적 특질(식민주의, 비합리주의)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대법의 화용론적 재해석이 요구하는 법실천의 새로운 조건(맥락주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언어에 있어서 법실현을 위하여 한국어의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요소에 대한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sup>189)</sup>. 이에 기초한 한국어의 특징적 요소를 파악하면 ①한국말의 대화와 맥락의 충족, ②한국말의 '부정의 변증'을 통한 법실현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언어에 있어서 주체성에 대한 보다 명백한 발현을 전제로 하는 주체와 주체간의 승인과 상호이해에 기초한 이중성과 상호주관성에 근거하여 교류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호주관성은 한국말이 유럽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중주어 또는 겹주어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sup>190)</sup>. 이 점은 한국말에 있어서 화자간의 대화는 주체와 객체로 관계 맺음하기 보다는 주체와 주체의 상호적 관계로 맺는 대화적 태도의 사유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삶의 양식은 언어의 양식에서 볼 때 그 원형은 대화적인 것이라는 특징이 존재하는 것이다.

189) 한국어에 대한 기호론적 분석에 관하여는 이상돈, 법과 한국어, 전계논문, 57-65면 참조; 이상돈 교수는 한국어의 기호론적 특징을 식민주의, 비합리주의, 맥락주의로 들고 있다.

190) 이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는 서정수, 국어의 이중주어 문제, 국어국문학, 제62권, 1971; 정인상, 현대국어주어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제44권, 1980 등 참조(이상돈, 법과 한국어, 전계논문, 67면 재인용).

그러나 구문론적 차원에 축적되어 있는 대화적인 삶의 양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이 민주적이기보다는 권력적인 것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의미론적 식민주의의 역사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에 의한 정치적 의사형성과 정치적 의사소통의 흐름이 개방된 법체계와 상호이해가 교류되는 갈등해결의 절차와 법제도화 및 규범적 말행위를 자유롭고 기회균등하게 할 수 있는 법전문가공동체의 형성<sup>191)</sup> 등을 통하여 구문론에 내재된 대화적 구조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법언어의 정착과 법실현의 기본적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기초하여 한국어와 법령용어가 어떻게 정립되고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그 기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입법과 법률적용에 사용되는 법령용어는 현재까지 한국사회에 터잡은 ‘민주적 삶의 양식(demokratische Lebensform)’에 상응하는 언어를 중심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①언어감각은 학교교육에 의한 체계적인 사회화 과정을 마친 20대 후반의 한국인을 표준으로 하며<sup>192)</sup>, ②일본식 한자번역어는 하나의 ‘인공언어(Kunstsprache)’로서 보통의 한국인의 일상언어가 아니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③그러나 순수한 국어와 외래어의 구분이 아닌 일반시민의 민주적인 생활양식에 적응된 언어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며, ④법령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로만 표기하되 현재의 법체계를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전문용어는 과도기적으로 한글표기와 한자표기를 병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전통적인 우리의 한자어의 조사·수집·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해서 사문화되거나 사용빈도가 낮은 우리의 한자어에 대한 축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언어적 내용에 대한 역사적 연구·조사가 아닌 우리의 언어적 영역에 대한 확대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언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확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외국 법과 용어의 계수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순수한 한글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힘으로써 노견(路肩)

191) 이에 관하여는 이상돈·홍성수, 법사회학, 2000, 44-45면 참조.

192) 이상돈, 법관의 말행위와 올바른 법, 『법이론』, 1997, 385-402면 참조.

이라는 용어가 갖길로 정착되듯이<sup>193)</sup> 전문 법령용어에 있어서도 순수 한글용어의 사용빈도를 높이는 노력도 함께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조사의 작업은 단순한 개인적 학문연구와 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학계간 공동연구와 학계와 실무계간의 성과와 경험의 공유를 통한 연구·조사의 종합적 축적이 필요한 부분이며,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노력이 아닌 장기적이고 통일적인 연구·조사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193) 일반용어 중 최근에 한글화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새내기, 동아리 등의 예는 법령용어의 한글화에 대하여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고명윤, 법제실무의 기본개념, 국회보 1983. 9.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2000.
- 국어정보학회, 우리말 전산용어사전, 정음문화사, 1995.
- 국회법제사범위원회, 법률안심사사례집-체계·형식·자구-, 1993.
- 국회사무처, 법제실무, 1990.
- 권영민, 입법실무, 연수사, 1977.
- 김광해, 조망-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
- 김문오, 법조문의 문장실태조사, 국립국어연구원, 2001.
- \_\_\_\_\_,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 국립국어연구원, 2002.
- 김방한, 언어학의 이해, 민음사, 1994.
- 김승렬, 법령한글화사업에 관한 소고, 법제 제227호(1988).
- 김용옥, 철학의 사회성, 도올논문집, 1991.
- 김용진, 구법령정리사업에관한 소고, 법제 제218호(1988).
- 김윤한, 번역개념의 언어학적 기호론, 인문논총(서울대 인문학연구소), 제42집.
- 김지수, 현대법리와 언어, 인권과 정의 통권 제216호(1994. 8.).
- 김효진,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철학과 현실사, 1996.
- 김희선, 한·일한자어비교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8.
- 노태약, 전자문서의 개념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범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및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3.
- 박갑수, 국어의 표현과 순화론, 지학사, 1984.
- \_\_\_\_\_, 법률용어·문장 왜 이리 어려운가, 언론비평 1988. 7.
- \_\_\_\_\_, 민사소송법의 순화연구, 대법원보고서(미간행).
- 박병호, 현대법제의 형성과 법제의 발전방향, 법제연구 제8호.
- 박봉국, 입법의 이론과 실제, 입법조사월보, 1989. 1.

- 박영도, 입법이론연구(I)-입법기초이론과 입법기술, 한국법제연구원, 1990.  
\_\_\_\_\_, 입법이론연구(II)-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4.  
\_\_\_\_\_, 입법이론연구(III)-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5.  
\_\_\_\_\_, 입법이론연구(V)-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7.  
\_\_\_\_\_,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1.  
\_\_\_\_\_, 입법학 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2.
- 박영도·최성근·손희두,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01.
- 배종대, 우리나라 법학에 대한 반성과 전망, 현상과 인식, 1987(봄호).
- 법제처, 법령의 한글화작업에 따른 용어정리, 1973.  
\_\_\_\_\_, 법제처 40년사, 1988.  
\_\_\_\_\_, 법제처 50년사, 1998.  
\_\_\_\_\_, 한글표기용례집, 1988.  
\_\_\_\_\_, 법령입안심사기준, 1989, 1996.  
\_\_\_\_\_, 유사법령용어 사용례에 관한 검토(안), 1996.  
\_\_\_\_\_, 법령용어순화편람, 1994, 1996.  
\_\_\_\_\_,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 2002.
- 서정수, 국어의 이중주어 문제, 국어국문학 제62권(1971).
- 송민, 대통령의 출현, 새국어생활 제4호(2000. 10.).
- 신각철, 법령에 쓰이고 있는 일본식 표기용어의 정비,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
- 안기성, 한국 근대교육법제연구,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4.
- 이덕호, 언어차용에 관한 연구 I, 한글 제169호.
- 이상돈, 법률해석-말놀이에의 구성적 참여, 저스티스 제27권 제2호(1994).  
\_\_\_\_\_, 형법학, 법문사, 1999.
- 이정모·이재호 편, 인지심리학의 제문제(II)-언어와 인지, 학지사, 1997.
- 입법기술연구소 편, 법제실무연수자료집, 1989.
- 장명근, 현대법제의 역사적 형성과정, 저스티스 제27권 제2호(1994).
- 전봉덕, 한국 근대법사상사, 박영사, 1981.
- 정완용·배대현, 개정 전자서명법 해설서, 정보통신부, 2002.

- 정인상, 현대국어주어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제44권(1980).
- 총무처, 행정용어순화편람, 1993.
- 최대권, 제정법의 해석, 법학(서울대) 제30권 1·2호(1989).
- \_\_\_\_\_, 헌법학-법사회학적 접근-, 박영사, 1989.
- 최종고, 현대 한국법제의 형성과정고, 법학(서울대) 제32권 제1·2호.
- \_\_\_\_\_, 한국법의 근대화와 서양법의 수용, 한국법학 50년-과거·현재·미래(I), 한국법학교수회, 1998.
- \_\_\_\_\_, 한국의 서양법수용사, 박영사, 1982.
- \_\_\_\_\_, 한국의 법률가상, 길안사, 1995.
- \_\_\_\_\_, 한국법학사, 박영사, 1990.
-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의 비전, 2002.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사학논저목록 1945-1990, 1992.
- \_\_\_\_\_, 한말법령체제분석, 1991.
- \_\_\_\_\_,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문가회의 자료집, 2002. 5. 17.
- \_\_\_\_\_, 『현행 법률용어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전문가회의 자료집, 2002. 7. 25.
- \_\_\_\_\_, 『개정 민사소송법의 법령용어 및 법률문장의 순화와 향후 과제』, 전문가회의 자료집, 2003. 4. 30.
- 한국법제연구원·인터넷법학회, 『사이버 법령에서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동워크샵 자료집, 2003. 5. 23.
- 한국법제연구원·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외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2. 9. 13.
- 한국법제연구원·한국법철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법과 언어』,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1. 9. 21.

## 【외국문헌】

### 《영미문헌》

Ann Seidman, Robert B. Seidman, Nalin Abeysekere,



- Legislative Drafting for Democratic Social Change, Kluwer Law, 2001.
- Brian Bix, Law, Language and Legal Determinacy, Clarendon Press(Oxford), 1993.
- Elizabeth Reid, “Hierarchy and Power : Social Control in Cyberspace”, Communities in Cyberspace(edited by Marc A. Smith and Peter Kollock), Routledge(New York), 1999.
- Elmer Doonam, Charles Foster, Drafting, Cavendish Publishing, 2001.
- Fredrick Schauer, Law and Language,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3.
- Jonh Gibbons, Language and the Law, Longman, 1994.
- Lawrence Lessig 저, 김정오 역,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코드 : 사이버공간의 법이론), 나남출판, 2002.
- Lynn Bahrych, Marjorie Dick Rombauer, Legal writing, Thomson West, 2003.
- Peter Butt, Richard Castle, Modern Legal Draft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Robert J. Martineau, Drafting legislation and rules in plain english, West Group, 1998.
- Sherry Turkle, Life on the Screen :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Somon & Schuster(New York), 1995.
- Tom Morawetz, Law and Language, Ashgate, 2000.
- Tommy Neal, Lawmaking and the Legislative Process, ORYX Press, 1996.
- 《독·불문헌》
- André Bertrand, Thierry Piette-Coudol, Internet et le droit, P. U. F., 2000.

- Arthur Kaufmann, 심헌섭 역, 법과 언어(Recht und Sprache), 법학(서울대) 제25권 2·3호(1984).
- Charles-Albert Morand, Légistique formelle et matérielle, P. U. D'Aix-Marseille(Puam), 1999.
- Gérard Cornu, Linguistique juridique, Montchrestein, 1990.
- H. Hill, Einführung in die Gesetzgebungslehre, Heidelberg, 1982.
- Montesquieu, L'Esprit des lois, Larousse, 1995.
- Winfried Hassemer, 배종대·이상돈 편역, Strafrechtspolitik(형법정책), 세창출판사, 1998.

《일본문헌》

- 大久保泰保, 法の繼受と言語, 林 大・碧海純一 編, 法と日本語, 有斐閣, 1985.
- 法務省刑事局, 刑法現代用語化試案(參事官室檢討案), 1993. 2.
- 碧海純一, 法と言語, 日本評論社, 1965.
- \_\_\_\_\_, 法學の文章と日本語, 林 大・碧海純一 編, 法と日本語, 有斐閣, 1985.
- 松尾浩也・塩野 宏, 立法の平易和, 信山社, 1997.
- 澤木敬郎, 法の繼受, 『外國法と日本法』, 現代法 14.